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 목 차

I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	1
II . 결 산 요 약 및 분 석 .....	5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7
2. 세입의 결산 .....	8
3. 세출의 결산 .....	11
4.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	16
5. 예비비 결산 .....	18
6. 재무회계 결산 .....	20
7.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27
8. 재산의 결산 .....	28
9. 기금의 결산 .....	30
10.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	31
11. 금고의 결산 .....	32
12. 결산기준 .....	33
III . 검 사 결 과 요 약 .....	37
IV . 시 정 권 고 사 항 .....	53

# I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17년 4월 13일부터 2017년 5월 17일까지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우리의 결산검사결과는 첨부한 『검사결과 요약 및 시정권고사항』과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다음연도 이월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내용 등은 첨부한 시정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맹진영
위원 이운희	위원 송재형
위원 김상희	위원 김현철
위원 노동진	위원 박수하
위원 윤교임	위원 장택식
위원 진용의	



## Ⅱ . 결 산 요 약 및 분 석





#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가.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차인잔액 (가-나)
합 계	30,604,139	32,589,978	28,751,388	3,838,590
일 반 회 계	21,299,027	23,019,246	20,683,816	2,335,430
특 별 회 계	9,305,112	9,570,732	8,067,572	1,503,160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 세입예산현액 30조 6,041억 3,9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2조 5,899억 7,800만원(106.5%)이고,
- 세출예산현액 30조 6,041억 3,90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8조 7,513억 8,800만원(93.9%)이며,
-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3조 8,385억 9,0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5,296억 2,300만원, 사고이월비 4,046억 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6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조 8,726억 3,200만원입니다.

## 2. 세입의 결산

###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	
						(다/가)	(다/나)
합계	30,604,139	34,329,521	32,589,978	298,175	1,441,368	106.5	94.9
일반회계	21,299,027	24,647,022	23,019,246	296,523	1,331,253	108.1	93.4
특별회계	9,305,112	9,682,499	9,570,732	1,652	110,115	102.9	98.8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세입예산현액 30조 6,041억 3,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조 5,899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6.5%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0%) 대비 5.5%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비율(105.9%) 대비 0.6%p 증가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9%로 최근 5년간 평균 비율(94.1%) 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비율(94.5%) 대비 0.4%p 증가하였습니다.

## 나. 일반회계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율(%)	
				계	결손분	다음연도 이월액	(다/가)	(다/나)
합계	21,299,027	24,647,022	23,019,246	1,627,776	296,523	1,331,253	108.1	93.4
지방세	14,125,773	18,092,118	16,569,318	1,522,800	292,810	1,229,990	117.3	91.6
세외수입	1,565,371	996,927	892,007	104,920	3,713	101,207	57.0	89.5
지방교부세	131,042	135,677	135,677				103.5	100.0
보조금	3,051,721	3,005,527	3,005,527				98.5	100.0
지방채								
보전수입등	2,425,120	2,416,773	2,416,717	55		55	99.7	100.0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세입예산현액 21조 2,990억 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조 192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8.1%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0.6%)대비 7.5%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비율(106.6%)대비 1.5%p 증가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3.4%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2.2%)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비율(93.0%) 대비 0.4%p 증가하였습니다.

## 다. 특별회계

○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다/가)	(다/나)
합 계	9,305,112	9,682,499	9,570,733	111,766	1,652	110,114	102.9	98.8
기타특별회계 소 계	8,495,501	8,796,492	8,717,450	111,766	890	78,152	102.6	99.1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1,319,026	1,255,040	1,255,040				95.1	100.0
교 통 사 업	1,342,323	1,355,624	1,315,369	40,255	599	39,656	98.0	97.0
광역교통시설	155,363	226,937	209,786	17,151		17,151	135.0	92.4
주 택 사 업	1,412,984	1,650,303	1,646,340	3,963		3,963	116.5	99.8
도 시 개 발	1,492,175	1,535,356	1,534,562	794		794	102.8	99.9
하 수 도 사 업	831,676	892,204	875,412	16,792	288	16,504	105.3	98.1
집단에너지공급 사 업	255,129	189,606	189,566	40		40	74.3	100.0
의료급여기금	934,190	938,693	938,693				100.5	100.0
한강수질개선	30,901	30,813	30,813				99.7	100.0
소 방 안 전	721,734	721,916	721,869	47	3	44	100.0	100.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809,611	886,007	853,283	32,724	762	31,962	105.4	96.3
지역개발기금	316	744	744				235.5	100.0
수 도 사 업	809,295	885,263	852,539	32,724	762	31,962	105.3	96.3

○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세입 예산현액 9조 3,051억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조 5,707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9%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7%)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비율(104.2%) 대비 1.3%p 감소하였습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8%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8.5%) 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비율(98.5%) 대비 0.3%p 증가하였습니다.

### 3. 세출의 결산

####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합계	29,822,376	781,763	30,604,139	29,290,615	28,751,388	934,298	918,453	3.0
일반회계	20,984,104	314,923	21,299,027	20,817,826	20,683,816	246,231	368,980	1.7
특별회계	8,838,272	466,840	9,305,112	8,472,789	8,067,572	688,067	549,473	5.9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 예산액 29조 8,223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817억 6,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0조 6,041억 3,900만원에 지출액은 28조 7,513억 8,800만원(예산현액 대비 93.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42억 9,800만원(예산현액 대비 3.1%), 집행잔액은 9,184억 5,300만원(예산현액 대비 3.0%)입니다.

## 나. 일반회계

○ 2016회계연도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20,984,104	314,923	21,299,027	20,817,826	20,683,816	246,231	368,980	1.7
일반공공행정	5,388,991	36,105	5,425,096	5,378,186	5,372,075	19,032	33,989	0.6
경찰서및안	754,224	20,727	774,951	772,915	771,666	2,092	1,193	0.2
교육	3,053,138	514	3,053,652	3,044,517	3,041,300	3,216	9,136	0.3
문화 및 관광	533,076	73,377	606,453	563,880	548,369	28,497	29,587	4.9
환경보호	474,280	52,707	526,987	452,210	420,962	72,136	33,889	6.4
사회복지	6,713,780	20,080	6,733,860	6,565,655	6,555,928	31,594	146,338	2.2
보건	391,742	5,265	397,007	386,835	376,715	10,186	10,106	2.5
농림해양수산	16,825	100	16,925	14,181	14,181	1,400	1,344	7.9
산업·중소기업	273,435	28,962	302,397	285,527	278,957	12,417	11,023	3.6
수송 및 교통	1,130,038	95,150	1,225,188	1,218,946	1,214,767	4,840	5,581	0.5
주택및지역발	1,305,779	105,190	1,410,969	1,375,174	1,329,097	60,821	21,051	1.5
예 비 비	152,030	△129,230	22,800				22,800	100.0
기 타	795,167	5,976	801,143	758,421	758,420		42,723	5.3

## 다. 특별회계

○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8,838,272	466,840	9,305,112	8,472,789	8,067,572	688,067	549,473	5.9
기타특별회계 소 계	8,065,956	429,545	8,495,501	7,733,425	7,356,065	659,858	479,578	5.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1,268,099	50,927	1,319,026	1,167,019	1,134,365	94,029	90,632	6.9
교통사업	1,227,535	114,788	1,342,323	1,199,245	1,162,512	92,872	86,939	6.5
광역교통시설	92,879	62,484	155,363	131,438	90,805	48,685	15,873	10.2
주택사업	1,392,578	20,406	1,412,984	1,339,369	1,314,278	50,069	48,637	3.4
도시개발	1,361,208	130,967	1,492,175	1,281,885	1,097,292	271,500	123,383	8.3
하수도사업	781,882	49,794	831,676	758,938	722,576	73,805	35,295	4.2
잡단에너지공급 사업	254,950	179	255,129	181,486	181,485		73,644	28.9
의료급여기금	934,190		934,190	934,186	934,186		4	0.0
한강수질개선	30,901		30,901	28,296	27,283	1,151	2,467	8.0
소방안전	721,734		721,734	711,563	691,283	27,747	2,704	0.4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772,316	37,295	809,611	739,364	711,507	28,209	69,895	8.6
지역개발기금	316		316	3	3		313	99.1
수도사업	772,000	37,295	809,295	739,361	711,504	28,209	69,582	8.6



## 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발생 미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918,453	247,920	1,461	584,309	28,456	56,307
일반회계	368,980	76,369	197	242,409	27,205	22,800
특별회계	549,473	171,551	1,264	341,900	1,251	33,507
기타특별회계 소 계	479,578	167,336	122	284,634	1,251	26,235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90,632	77,430		12,733		469
교통사업	86,939	33,522		45,954	94	7,369
광역교통시설	15,873	13,996		1,319		558
주택사업	48,637	22,678	4	13,477		12,478
도시개발	123,383	15,791	115	106,186	588	703
하수도사업	35,295	3,754	3	30,487	547	504
집단에너지공급 사업	73,644			71,402		2,242
의료급여기금	4			4		
한강수질개선	2,467	165		899		1,403
소방안전	2,704			2,173	22	509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69,895	4,215	1,142	57,266		7,272
지역개발기금	313			8		305
수도사업	69,582	4,215	1,142	57,258		6,967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9,184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0%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잔액 비율 3.31%에 비해 0.31%p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2.98% 대비 0.02%p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3,689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73%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잔액 비율 2.40%에 비해 0.67%p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2.35% 대비 0.62%p 감소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5,494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5.91%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잔액 비율 5.29%에 비해 0.62%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4.53% 대비 1.38%p 증가하였습니다.

## 4.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 2016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30,604,139	529,623	404,675		3.1
일반회계	21,299,027	161,020	85,211		1.2
특별회계	9,305,112	368,603	319,464		7.4
기타특별회계 소	8,495,501	368,603	291,255		7.8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1,319,026	66,241	27,788		7.1
교통사업	1,342,323	60,897	31,975		6.9
광역교통시설	155,363	20,535	28,150		31.3
주택사업	1,412,984	25,701	24,368		3.5
도시개발	1,492,175	124,529	146,971		18.2
하수도사업	831,676	47,215	26,590		8.9
집단에너지공급 사업	255,129				0.0
의료급여기금	934,190				0.0
한강수질개선	30,901	140	1,011		3.7
소방안전	721,734	23,345	4,402		3.8
공기업특별회계 소	809,611		28,209		3.5
지역개발기금	316				0.0
수도사업	809,295		28,209		3.5

- 2016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비 중
  -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1,610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3,686억 300만원입니다.
  -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852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3,194억 6,400만원입니다.

## 5. 예비비 결산

### 가. 총 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92,210	135,903	135,867	135,654		249
일반회계	152,030	129,230	129,195	128,982		248
특별회계	40,180	6,673	6,672	6,672		1

#### ○ 2016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결과

- 예비비 예산은 1,922억 1,000만원, 지출결정액은 1,359억 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56억 5,4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2억 4,900만원입니다.

### 나.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52,030	129,230	129,195	128,982		248
일반공공행정	152,030	14,011	13,981	13,981		30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514	513	300		214
문화및관광		2,484	2,481	2,481		3
환경보호		816	816	816		0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92,646	92,645	92,645		1
국토및지역개발		12,783	12,783	12,783		0
과학기술						
기타		5,976	5,976	5,976		0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520억 3,000만원, 지출결정액은 1,292억 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89억 8,2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2억 4,800만원입니다.

## 다.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40,180	6,673	6,672	6,672		1
기타특별회계 소 계	32,908	6,673	6,672	6,672		1
도시철도건설 사 업 비	469					
교 통 사 업	9,743	2,374	2,374	2,374		0
광역교통시설	558					
주 택 사 업	12,478					
도 시 개 발	5,002	4,299	4,298	4,298		1
하 수 도 사 업	504					
집단에너지공급 사 업	2,242					
의 료 급 여						
한강수질개선	1,403					
소방안전	509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7,272					
지역개발기금	305					
수 도 사 업	6,967					

-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401억 8,000만원, 지출결정액은 66억 7,300만원, 지출액은 66억 7,200만원, 지출결정액중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 6. 재무회계 결산

### 가. 개요

- 2016회계연도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부채 비율)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16년	126,711,658	7,700,451	119,011,207	23,035,143	24,548,721	(1,513,578)	6.08%
2015년	123,454,731	6,624,245	116,830,486	21,292,619	22,924,126	(1,631,507)	5.37%
증 감	3,256,927	1,076,206	2,180,721	1,742,524	1,624,595	117,929	0.71%

- 2016회계연도 서울시의 재무결산 결과
  - － 자산은 전년대비 3조 2,569억 2,705만원(2.6%) 증가한 126조 7,116억 5,785만원이며
  - － 부채는 전년대비 1조 762억 621만원(16.2%)이 증가한 7조 7,004억 5,090만원으로
  -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2조 1,807억 2,084만원 증가한 119조 112억 695만원입니다.
  - － 비용은 전년대비 1조 7,425억 2,405만원(8.2%)이 증가한 23조 351억 4,349만원이며
  - － 수익은 전년대비 1조 6,245억 9,531만원 (7.1%)이 증가한 24조 5,487억 2,134만원으로
  - －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1,179억 2,874만원 감소한 1조 5,135억 7,785만원(흑자)입니다.

## 나.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총 계	126,711,658	100%	123,454,731	100%
유 동 자 산	6,674,044	5.3%	5,509,792	4.5%
투 자 자 산	15,586,490	12.3%	15,233,825	12.3%
일 반 유 형 자 산	9,331,427	7.4%	9,631,486	7.8%
주 민 편 의 시 설	22,859,699	18.0%	22,042,928	17.8%
사 회 기 반 시 설	71,511,335	56.4%	70,599,872	57.2%
기 타 비 유 동 자 산	748,662	0.6%	436,828	0.4%
부 채 총 계	7,700,451	100%	6,624,245	100%
유 동 부 채	2,420,625	31.5%	1,622,396	24.5%
장 기 차 입 부 채	2,843,900	36.9%	2,988,863	45.1%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435,926	31.6%	2,012,986	30.4%
순 자 산 총 계	119,011,207		116,830,486	100%
부채 및 순자산총계	126,711,658		123,454,731	

### ○ 자산의 주요내역

- 자산의 주요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6,674,044백만원(5.3%)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20,037,613백만원(94.7%)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2,682,540백만원, 단기금융상품 2,150,963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1,229,990백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 세외수입금은 171,276백만원, 재고자산 49,905백만원, 기타 유동자산 310,947백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은 (198,172)백만원입니다.

-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15,586,490백만원(12.3%), 일반유형 자산 9,331,427백만원(7.4%), 주민편의시설 22,859,699백만원(18.0%), 사회기반시설 71,511,335백만원(56.4%), 기타비 유동자산 748,662백만원(0.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년대비 증가한 자산의 주요 내역은 토지·건물·구축물(교량 및 터널) 등 유형자산 1조 3,968억원,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현금 및 예금 9,213억원, 투자자산(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서울리츠부동산 출자금 등) 5,300억원, 기타 건설중인 자산 3,752억원, 온실가스배출권 140억원 등이 증가하고, 감소한 자산은 미수세금 및 세외수입금 등 1,130억원 입니다.

#### ○ 부채

- 부채의 주요 구성내역은 유동부채 2,420,625백만원(31.5%), 장기차입부채 2,843,900백만원(36.9%), 기타비유동부채 2,435,926 백만원(31.6%)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와 비교시 부채총액은 1,076,20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중앙정부차입금 등 채무 1,596억원과 임대 주택 공급량 증가(3,658가구)로 인한 임대보증금 4,411억원, 일반미지급금(자치구 조정교부금 1,795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2,391억원) 등 이며, 감소한 부채의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선수금 252억 원입니다.

## 다. 재정운영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I.사업순원가	19,929,174	6,125,411	13,803,764	18,423,379	5,669,244	12,754,135
II.관리운영비			6,231,865			1,747,385
III.비배분비용			1,325,691			1,121,855
IV.비배분수익			1,026,518			749,600
V.재정운영순원가 ( I + II + III - IV )			20,334,802			14,873,775
VI.일반수익			21,848,380			16,505,282
VII.재정운영결과 ( V - VI )			(1,513,578)			(1,631,507)

### ○ 기능별 분류

-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서울시의 사업순원가는 13,803,764백만원, 관리운영비 6,231,865백만원, 비배분비용 1,325,691백만원 및 비배분수익 1,026,518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0,334,802백만원이며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1,848,380백만원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513,578백만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 라. 재정운영표(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비 용 총 계	23,035,143	100%	21,292,619	100%
인 건 비	1,647,313	7.2%	1,573,899	7.4%
운 영 비	4,884,119	21.2%	4,582,681	21.5%
정 부 간 이 전 비 용	12,670,620	55.0%	11,682,308	54.9%
민 간 등 이 전 비 용	2,440,427	10.6%	1,968,618	9.2%
기 타 비 용	1,392,664	6.0%	1,485,113	7.0%
수 익 총 계	24,548,721	100%	22,924,126	100%
자 체 조 달 수 익	19,954,162	81.3%	18,555,091	80.9%
정 부 간 이 전 수 익	4,199,270	17.1%	3,998,373	17.5%
기 타 수 익	395,289	1.6%	370,662	1.6%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1,513,578)		(1,631,507)	

### ○ 비용의 주요내역

-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647,313백만원(7.2%), 운영비 4,884,119백만원(21.2%), 정부간이전비용 12,670,620백만원(55.0%), 민간등이전비용 2,440,427백만원(10.6%), 기타비용 1,392,664백만원(6.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전년과 비교시 총비용은 23,035,143백만원으로 1,742,52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시도비보조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2,118억·어르신사회활동지원 653억, 사회복지 공무원 급여 656억 등) 4,921억원과 2016년 지방세수익 증가로 인한 자치구조정교부금 4,293억원 및 교육청법정전출금 2,258억원, 기타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 3,014억원,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1,883억원 등이며, 반면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 9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 수익의 주요내역

-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9,954,162백만원(81.3%)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4,199,270백만원(17.1%), 기타수익 395,289백만원(1.6%)으로 자체조달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 전년과 비교시 총수익은 24,548,721백만원으로 1조 624,59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익 8,886억원과 시유재산을 공사공단으로의 출자전환에 따른 처분이익(시세차익) 등 임시세외 수익 4,358억원, 기타 재산임대료 및 사용료수익 1,137억원, 국고보조금수익 1,043억원 등이며, 한편 감소한 수익은 기부금 수익 60억 원 등입니다.

## 마. 회계별 재무제표(요약)

2016년 12월 31일 현재 및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회 계 구 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A)	부채(B)	순자산(A-B)	비용(A)	수익(B)	재 정 운 영 결 과(A-B)
일 반 회 계		91,257,378	1,953,581	89,303,797	21,288,973	21,245,342	43,631
기 타 특 별 회 계	도시철도건설	3,368,128	2,267,620	1,100,508	155,870	222,428	(66,558)
	교통사업	6,264,571	1,137,735	5,126,836	1,373,196	1,345,756	27,440
	주택사업	10,114,569	3,257,469	6,857,100	623,113	720,912	(97,799)
	도시개발	5,244,442	272,778	4,971,664	599,310	1,088,204	(488,895)
	하수도사업	1,577,538	25,665	1,551,873	594,217	714,239	(120,023)
	집단에너지공급	456,867	55,993	400,874	172,795	366,909	(194,114)
	의료급여기금	5,056		5,056	934,222	935,135	(913)
	한강수질개선	3,651	349	3,302	27,053	28,509	(1,456)
	광역교통시설	980,827	115,581	865,246	20,490	122,675	(102,184)
	소방안전	80,852	3,528	77,324	639,691	719,507	(79,815)
	소 계	28,096,501	7,136,718	20,959,783	5,139,957	6,264,274	(1,124,317)
기 금	재정투융자	2,717,105	1,388,913	1,328,192	18,398	32,833	(14,435)
	중소기업육성	686,399	218,010	468,389	43,763	50,623	(6,860)
	식품진흥	69,253		69,253	3,601	2,917	684
	기후변화	102,130		102,130	6,496	7,283	(787)
	도로굴착복구	16,612		16,612	24,070	23,233	837
	성평등기금	24,086		24,086	719	700	19
	자원회수시설	36,473		36,473	19,609	22,398	(2,789)
	수도권매립	179		179	60,900	60,983	(83)
	사회복지	87,398		87,398	8,258	5,223	3,034
	체육진흥	58,567		58,567	9,196	8,172	1,024
	감채기금	1,793,353	584,000	1,209,353	82,142	462,539	(380,397)
	재난관리	588,072		588,072	42,411	99,664	(57,252)
	남북교류협력	19,177		19,177	682	348	334
	대외협력	7,546		7,546	3,776	3,153	623
	사회투자기금	49,996		49,996	1,241	3,224	(1,983)
	소 계	6,256,346	2,190,923	4,065,423	325,262	783,293	(458,031)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수도사업	5,360,685	284,727	5,075,958	732,534	706,931
지역개발기금		5,644		5,644	3	467	(464)
소 계		5,366,329	284,727	5,081,602	732,537	707,398	25,139
내부거래	(4,264,896)	(3,865,498)	(399,398)	(4,451,586)	(4,451,586)		
합 계	126,711,658	7,700,451	119,011,207	23,035,143	24,548,721	(1,513,578)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이 괄호()로 표시되면 흑자 임

## 7.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가. 채 권

- 2016회계연도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6년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303,636	88,224	582,794	494,570	1,391,860
일반회계	364,011	15,848	78,645	62,797	379,859
특별회계	167,886	101,684	171,361	69,677	269,570
기 금	771,739	29,308	332,787	362,095	742,431

-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조 3,918억 6,000만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용은

- 보증금채권 2,591억 4,700만원,
- 융자금채권 1조 456억 8,100만원,
- 미수금채권 452억 100만원,
- 기타 채권 418억 3,200만원이며,

2015년도 말에 비해 88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나. 채무증감 및 현재액

- 2016회계연도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현재액
		순증감	증가	감소	
합계	3,422,998	53,977	594,732	540,755	3,476,975
일반회계	609,251	△89,251		89,251	520,000
특별회계	2,813,747	143,228	594,732	451,504	2,956,975
기타	2,812,247	144,728	594,732	450,004	2,956,975
공기업	1,500	△1,500		1,500	

-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조 4,769억 7,5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대비 53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8. 재산의 결산

### 가. 물 품

- 2016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정수	2015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합계	11,967	수량	10,850	1,158	1,638	2,796	251	1,475	1,726	11,920
		금액	185,019	20,201	33,111	53,312	10,838	27,031	37,869	200,461

- 2016년도 말 정수물품은 수량 11,920개, 현재액 2,004억 6,100만원으로 2015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1,070개 증가하고, 금액은 15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나. 공유재산

- 2016회계연도 공유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2016년도말 현재액	
		증가	감소		
합계	112,034,530	5,510,578	3,531,339	114,013,769	
행정재산	계	94,568,142	4,118,563	3,436,254	95,250,450
	공용재산	8,720,436	254,886	36,614	8,938,708
	공공용재산	78,059,874	519,892	3,188,110	75,391,655
	기업용재산	6,195,334	3,132,340	82	9,327,592
	보존재산	1,592,498	211,445	211,448	1,592,495
일반재산	17,466,388	1,392,015	95,085	18,763,319	

- 2016년도 말 공유재산은

- 토지 104,641천㎡ 72조 8,423억 7,900만원
- 건물 9,770천㎡ 5조 7,636억 6,500만원
- 기타 14,553천건 35조 4,077억 2,500만원

공유재산은 총 114조 137억 6,900만원이며, 2015년도 말에 비해 1조 9,79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축 등 1조 1,198억 8,800만원, 문화비축기지공원 및 풍납토성 부지 등 매입 9,343억 2,400만원, 공공임대주택(2,996세대) 매입 7,158억 9,700만원 등입니다.



## 9. 기금의 결산

○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수입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6년도말 현재액
		순증감	증 가	감 소	
합 계	718,191	276,722	1,528,765	1,252,043	994,913
재 정 투 용 자 기 금	124,076	△24,528	548,555	573,083	99,54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68,270	△71,260	206,934	278,194	197,010
식 품 진 흥 기 금	6,939	100	3,920	3,820	7,039
기 후 변 화 기 금	14,340	8,052	28,195	20,143	22,392
사 회 투 자 기 금	22,857	△12,931	8,823	21,754	9,926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7,266	△795	23,235	24,030	16,471
성 평 등 기 금	205	△19	700	719	186
자 원 회 수 관 련 시 설 주 변 지 역 지 원 기 금	11,715	3,873	84,382	80,509	15,588
사 회 복 지 기 금	29,503	△384	24,538	24,922	29,119
체 육 진 흥 기 금	3,401	△1,477	8,172	9,649	1,924
감 채 기 금	9,383	295,633	462,550	166,917	305,016
재 난 관 리 기 금	196,897	78,771	119,630	40,859	275,668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7,998	7	3,690	3,683	8,005
대 외 협 력 기 금	5,341	1,680	5,441	3,761	7,021

○ 2016년도말 현재액은 9,949억 1,300만원으로 2015년도말의 7,181억 9,100만원에 비해 2,76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10.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6년도말 현재액
		순 증 감	증 가	감 소	
합 계	178,016	40,153	401,167	361,014	218,169
보 증 금	70,295	△12,447	15,031	27,478	57,848
보 관 금	107,721	52,596	386,123	333,527	160,317
기 타	-	4	13	9	4

- 2016년도말의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181억 6,900만원으로 2015년도말의 1,780억 1,600만원에 비해 401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11. 금고의 결산

- 2016회계연도 금고의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세 입	수 입	33,570,455,825,063	23,995,201,594,538	9,575,254,230,525
	과오납액 반납액	980,477,385,786	975,955,321,426	4,522,064,360
	세입액 (가)	32,589,978,439,277	23,019,246,273,112	9,570,732,166,165
세 출	현지금 금액	28,769,745,712,220	20,689,307,467,871	8,080,438,244,349
	반납액	18,357,289,555	5,490,642,371	12,866,647,184
	지급액 (나)	28,751,388,422,665	20,683,816,825,500	8,067,571,597,165
잔액 (가 - 나)		3,838,590,016,612	2,335,429,447,612	1,503,160,569,000

- 시 금고에서 통보된 2016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 되었습니다.

## 12. 결산기준

가. 회계연도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 회계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 12월 31일 폐쇄

-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금고 납입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

라.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기준

- 세 입

-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 세 출

-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 공사비·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그 밖의 경비: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마. 출납사무의 완결 : 지방회계법 제7조에 의거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사무 완결

○ 회계연도 내

- 지출원인행위의 마감

○ 출납폐쇄기한 내

- 세출금의 정산지출 : 개산금, 선금급
- 지출원이 지출한 세출금의 반납
- 세입세출 집행오류 과목의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 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 출납원의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 세출예산의 이월

○ 회계연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금고납입
- 결산승인 신청시 첨부할 최종잔액 증명 발행

○ 회계연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 보고 또는 장부의 정리, 계산증명서류의 정리 등

바. 지출원인행위 정리기준

○ 일반적인 지출원인행위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 급여류 · 수당류 ·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출연금 · 제 세 · 기 타	지출결정 시 지출결정 시 지출결정 시(교부결정 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 시 납입결정 시 (신고 시) 지출결정 시	당해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용자금 · 공사비 · 기 타	납부결정 시 용자결정 시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시(청구 받은 때)	납부결정액 용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 받은 금액)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업무추진비 · 기 타	전출결정 시 납부결정 시 지출결정 시(계약체결 시) 지출결정 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 예외적인 지출원인행위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 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 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결정 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 등에 의한 지출	지출결정 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시	채무부담행위액

### Ⅲ. 검 사 결 과 요 약





# 검 사 결 과 요약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그 첨부 서류에 대한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결산총괄

1) 이월사업비 총액은 9,342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 (전년도 2.9%, 2014회계연도 2.3%)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7,817억 6,300만원보다 1,52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이 일반회계 1,610억 2,000만원, 특별회계 3,686억 300만원, 사고이월액이 일반회계 852억 1,100만원, 특별회계 3,194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을 준수하여 사고이월비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2)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대비 9.4%(전년도 8.8%, 2014회계연도 3.9%)인 2조 8,72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61%p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조 58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6,887억 8,500만원에 비해 3,700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8,138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6,922억 2,400만원에 비해 1,21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균형

예산과 멀어지는 예산집행으로, 특히 추경을 통하여 2조 3,057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대하였음에도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는 21.0%, 특별회계는 17.6%가 증가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사안으로,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보다 과학적인 예측을 통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경예산을 포함한 신축적인 예산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불용액은 9,184억 5,300만원으로 여러 가지의 발생사유를 들고 있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불용에 대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구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사업과 같이 사고이월 가능한 예산을 지출원인행위의 미필로 인해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거나, 오류동 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처럼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과도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해 불용되는 경우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이기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예산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예산편성 오류를 희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5) 결산검사는 단순히 편성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의 재정 감독 수단이며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과업입니다.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실국에서 제출하는 결산 관련 자료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자료의 불일치 여부조차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거나, 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것은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6) 2016회계연도 기준 서울시 산하기관의 채무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향후 적극적으로 채무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 증가가 우려되므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세입결산

1) 세입 예산현액 30조 6,041억 3,900만원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5%인 32조 5,899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105.9%대비 0.6%p 증가하였고, 최근 5개년 평균비율(101.0%)에 비해 5.5%p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14조 1,257억 7,300만원인데 세입 결산액은 16조 5,693억 1,800만원으로 17.3%인 2조 4,435억 4,500만원이 초과 징수(전년도는 13.3%인 1조 8,368억 9,100만원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 추계방식을 개별 세목, 세수의 탄력성, 과세표준의 신장률, 경기변동 상황 등 세수 추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고, 기존의 시계열 분석방법 등은 물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발한 세수 추계기법을 적용하여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수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DTI·LTV 완화기간 연장 등과 같은 세입예산편성시 예측내용에 반하는 세수증감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세입예산보다 48.1%, 1조 5,899억원 초과수납된 4조 8,921억 1,000만원이 실수납되어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입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세수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계연도내 추경을 통하여 세입예산의 증감조정을 함으로써 세수추계의 오류를 보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의 편성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 일반회계 수납액은 23조 192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1%로서 전년도 비율(106.6%) 대비 1.5%p가 증가하였습니다.

38세금징수과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조 6,277억 7,600만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유현황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해행위 조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즉각적으로 결손처분을 이행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징세비용을 절약하고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특별회계 수납액은 9조 5,707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9%로서 전년도 비율(104.2%)대비 1.3%p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고, 세입징수에 있어 부주의한 과오납이 발생하여 이를 수납 후 반환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재정적인 손실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4)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회계연도에 서울혁신파크 사용료수입 3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서울시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서울 혁신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한 수탁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총계주의원칙과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이니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세출결산

1)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9,342억 9,800만원, 예산현액 대비 3.1%로서 전년도 비율(2.9%) 대비 0.2%p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비율(1.6%)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비율(5.9%) 대비 1.5%p 증가하였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수요 예측 오류 등의 사유로 지난 2년간 약 430억 가량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린카보급사업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이월 후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리한 이월을 지양하고 불용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9,184억 5,300만원, 예산현액 대비 3.0%로 전년도 비율(2.98%) 대비 0.02%p 증가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 집행잔액(63.6%),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27.0%), 예비비(6.13%), 예산절감(0.15%), 보조금 집행잔액(3.1%) 등입니다.

계획변경이나 사업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2,479억 2,000만원으로 이와 같은 집행 잔액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확정된 예산은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사업은 면밀한 사업계획과 이해 관계자간의 협의가 미흡하여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5회계연도에 명시 이월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고, 결국 다른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 운용은 근절되어야 하겠습니까.

3) 서울시가 SH공사에 대행을 맡긴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의 경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는 사업비를 선지급 하였으며, SH공사는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용도인 서울역일대 앵커시설 부지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SH공사 간의 대행사업은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SH공사가 수행할 경우 좀 더 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새문안동네 조성사업의 경우 SH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대행한 뒤 제3자에게 다시 대행한 바, 서울시는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협약 및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변경은 지양하여야 하고, 향후 철저히 사업비를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환받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에 비해 민간대행사업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산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기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경우도 적기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5) 그 외, 경제진흥본부의 경우처럼 세부 사업과 무관한 광고홍보비의 지출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총괄본부의 교량 및 도로 보수 사업과 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니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방송은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고 계약진행과정에서도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된 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예비비의 결산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2016년도 예산은 1,922억 1,000만원, 지출결정액은 1,359억 300만원으로 이 중 99.9%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0.18%는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고, 지출에 있어서도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예산 이용 및 전용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의 예비비 집행액은 1,356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1,081억 9,800만원보다 27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교통본부가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물 신규 인수·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예비비 23억 7,400만원은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왜곡한 지출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비용이 아닌 사업이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 5. 재무회계 결산

### 1) 재정상태표

2016회계연도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자산은 126조 7,116억 5,785만원으로 전년대비 3조 2,569억 2,705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7조 7,004억 5,09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 762억 621만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순자산이 119조 112억 695만원으로 전년대비 2조 1,80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증가와 임대주택 공급량 증가로 인한 임대보증금 증가 등의 사유로 부채가 직전연도에 대비하여 16.2% 증가(1조 762억 621만원)하였는 바, 서울시는 부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 2) 재정운영표

2016회계연도 서울시의 재무결산 결과 수익은 24조 5,487억 2,134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 6,245억 9,531만원 증가하였고 비용은 23조 351억 4,349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 7,425억 2,405만원 증가하여,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1,179억 2,874만원 감소한 1조 5,135억 7,78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중앙정부보조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지출액도 병행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서울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토대로 보다 건전한 재정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6. 채권 · 채무의 결산

1)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조 3,918억 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882억 2,400만원이 증가(6.8%)하였고, 채권 종류별로는 융자금 채권이 1조 456억 8,100만원으로 전체 채권의 75.1%를 차지하고 있어 융자금 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2)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이 3조 4,769억 7,500만원(복식부기를 적용한 결산상 부채는 7조 7,004억 5,1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으로 전년 보다 1.6%(539억 7,700만원)가 증가한 바,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7. 재산의 결산

### 1)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114조 137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조 5,105억 7,800만원이 증가하고 3조 5,313억 3,900만원이 감소하여 1조 9,792억 3,900만원이 순증가(1.8%)한 바, 그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축 등 1조 1,198억 8,800만원, 문화비축기지공원 및 풍납

토성 부지 등 매입 9,343억 2,400만원, 공공임대주택(2,996세대) 매입 7,158억 9,700만원 등입니다.

공유재산 중 미관리 공유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점유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시효중단 조치 등을 조속히 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사업위탁 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공유재산과 물품은 서울시의 재산으로 등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 2) 물품

정수물품은 2,004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3억 1,200만원이 증가하고 378억 6,900만원 감소하여 154억 4,300만원이 순증가(8.3%) 하였습니다.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기금의 결산

기금은 9,949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67억 2,200만원이 증가(38.5%)하였습니다. 기금의 예치 관리에 있어서 금융상품 및 예치기간의 선택시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을 예치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수입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의 예산에만 100% 의존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는 개별 기금들 가운데 법적의무 없이 시가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시의 재정 운영 효율화와 민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내실있고 심층적인 심의를 통해 기금 존속 기한 연장여부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9.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은 2,181억 6,9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중 4,011억 6,700만원이 증가하고 3,610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401억 5,300만원이 순증가(22.6%)하였습니다.

자치구로부터 회수될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은 세입 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서울시의 세입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 후 서울시에서 반납 조치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통일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10. 2016 회계연도 결산의 특징

2016회계연도 서울 시정은 실업률 및 가계부채 증가 등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제9대 의회와 제2기 박원순 시장 체제의 집행부의 노력에 힘입어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고 시정정보의 완전공개, 소통 및 참여에 대한 일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시정운영 역점 사업인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도시 안전, 건강한 도시환경과 시민참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2016회계연도 서울재정을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아쉬운 측면 또한 존재합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특정 실 본부 국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말에 임박하여 공사 및 용역계약을 발주하는 현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과 빈번한 수의계약 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실시한 SH공사 현장검사를 통해 건설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가 선지급되거나, 대행사업을 바로 제3자에게 대행을 주거나, 사업과 무관한 곳에 지출하는 등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SH공사 이외에도 서울시가 대행을 맡긴 다른 사업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기에,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등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IV. 시 정 권 고 사 항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정권고사항	소관 실국
1	예산총계주의,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 등 준수요망	서울혁신기획관
2	동남권시민청사업 추진 지연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시민소통기획관
3	일회성 축제와 같은 행사 경비 지출 지양 권고	여성가족정책실
4	불용 과다 사업에 대한 관례적 예산편성 지양	여성가족정책실
5	뉴딜일자리 목적에 맞는 면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
6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 철저	일자리노동정책관
7	서울영어마을 지원 사업 실효성 검토	평생교육정책관
8	기금 폐지·통합을 통한 기금운용 효율성 개선	기획조정실
9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기획조정실
10	‘일자리 대장정’ 추진을 위한 편법적인 예산 운용 지양 필요	경제진흥본부
11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대상의 선정	경제진흥본부
12	부실한 사업계획에 따른 저조한 집행실적	경제진흥본부
13	글로벌 창업센터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경제진흥본부
14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강구	경제진흥본부
15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및 세부 사업과 무관한 광고홍보비 지출 지양	경제진흥본부
16	세부 사업과 무관한 광고홍보비 지출 지양	경제진흥본부

연번	시 정 권 고 사 항	소관 실국
17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의 최소화	경제진흥본부
18	서울농장 조성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강구	경제진흥본부
19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변경 최소화 촉구	경제진흥본부
20	사무관리비 등 부족예산에 대한 예비비 우회지출 최소화 필요	도시교통본부
21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사업의 효율적 집행	도시교통본부
22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검토	도시교통본부
23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 사업의 효율적 집행 검토	도시교통본부
24	미수납액 관리철저	문화본부
25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촉구	문화본부
26	그린카 보급 사업의 반복적 이월 후 집행잔액 과다 발생	기후환경본부
27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의 집행률 저조	기후환경본부
28	특별조정교부금 조기집행 촉구	행정국
2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효율적 운용	행정국
30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철저	행정국
31	여유자금 운영방식 검토 권고	재무국
32	정밀한 세입추계 및 여건변동에 대한 대응 철저	재무국
33	체계적인 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전액 불용 사업 근절 필요	관광체육국
34	서울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정산 철저	관광체육국

연번	시 정 권 고 사 항	소관 실국
35	서남권 돛야구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촉구	관광체육국
36	에스에이치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도시공간개선단
37	과다한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관리 필요	안전총괄본부
38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 예산편성 권고	안전총괄본부
39	필요예산은 사전 원인행위하여 사고이월 가능하도록 조치	안전총괄본부
4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미 준수	도시재생본부
41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관행 근절	도시재생본부
42	주거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촉구	도시재생본부
43	두레주택 관련 보조금 정산계좌 관리 철저	도시재생본부
44	성곽마을 재생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정산 누락	도시재생본부
45	대행사업비 관리감독 철저(창신·송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본부
46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이월 지양	도시계획국
47	서울역 고가정원 사업의 과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처리	푸른도시국
48	착오로 인한 세입예산 과다편성 주의	물순환안전국
49	출납폐쇄기한 준수 권고	물순환안전국
50	인건비 과소편성에 따른 예산 전용	소방재난본부
51	치밀한 사업계획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	인재개발원
52	반복적 이월,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개선 요망	도시기반시설본부

연번	시 정 권 고 사 항	소관 실국
53	지반침하조사 등 예산편성 신중 촉구	도시기반시설본부
54	사업비 예산편성 미비로 인한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성	한강사업본부
55	하천점용료 부과 누락	한강사업본부
56	교통방송 계약사무 관련 철저 요망	교통방송
57	예비비 편성기준 준수 권고	교통방송
58	세입예산 과다편성 지양	교통방송
59	각 위원회 참석수당 등 합리적 조정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60	예산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요망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 1. 예산총계주의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 등 준수 요망

##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회계연도에 서울혁신파크 사용료수입 3억 8,300만원(전년도 이월액 5,100만원 포함)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서울시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한 수탁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2016회계연도에 발생한 사용료수입 중 2억 5,200만원을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해 자체 집행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혁신파크 사용료수입 관련현황

(단위 : 백만원)

2016회계연도 사용료수입 수납액			수탁기관 자체 집행액 (나)	2016회계연도 이자수익 (다)	서울시 세입조치 (라)=[(가)-(나)]+(다)
수납액 계 (가)	2016회계연도분	2015회계연도 이월액			
383,299	331,482	51,817	252,783	114	130,630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4조<sup>1)</sup>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조 제3항에 따라 세입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1)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혁신파크 사용료수입을 서울시의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25조<sup>2)</sup>와 제26조,<sup>3)</sup>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수입대체경비 등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대체경비 등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탁기관에서 서울혁신파크 사용료를 자체 집행하도록 한 동 사안은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2017년 2월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회계연도 서울혁신파크 사용료수입 수납액 중 수탁기관에 의해 자체 집행되지 않은 1억 3,000만 원을 서울시로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의회의 지적<sup>4)</sup>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임대를 통해 얻은 수입을 서울시 세입에 편입하였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

---

2) 「지방회계법」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회계법」 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 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제22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사용할 수 있다.

4) 서울시의회,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6.12.), 26쪽.

3. 서울혁신센터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세입 조치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잡고 자체 지출한 바, 이는 잘못 된 것으로 시정해주기를 바람.

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225-01)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어,<sup>5)</sup> 2016회계연도 사용료수입을 지난연도 수입(225-01)이 아닌 그외수입(224-06)으로 부과하고 세입조치한 동 사안은 세입과목 구분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시정 권고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와 「지방회계법」 제26조가 정하고 있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은 자치단체의 재정전반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의회와 주민에 의한 재정상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준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기준에서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 상호중복과 혼란이 없도록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세입·세출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혁신기획관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의 투명한 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

5) 행정자치부,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6.7.), 98쪽.



## 2. 동남권시민청사업 추진 지연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민청은 총 8,150.65㎡ 규모로 지하 1층은 시민이 참여하는 비움과 유연성의 공간으로, 지하 2층은 심화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생활마당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1월 12일 개관 이래 대규모 방문과 높은 시민만족도를 보이는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 이용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시민요구 등에 따라 동남권 시민청을 조성 추진하였으나, 관할 자치구의 조성 반대와 그로 인한 법률쟁송 등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 강남구와의 법률쟁송 : 5회에 걸친 행정심판·소송과 감사원 공익감사시 서울시 승소 및 기각되어 법률적 타당성 인정됨

#### ○ 2016년 시민청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잔액(A-B)	집행률
시민청 운영 및 확산	4,464,066	2,214,813	2,249,253	49.61%
사무관리비	376,200	370,854	5,346	98.57%
민간위탁금	2,746,383	1,843,959	902,423	67.14%
시설비 (사고이월)	1,332,170		1,332,170	0%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9,313		9,313	0%

○ 2016년 시민청 예산 주요 불용 내역

- 시설비, 시설부대비 : 1,341,483천원
- 제2시민청 민간위탁금 : 799,995천원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동남권 시민청의 입주문제로 사고이월이 많이 된 것은 이해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에 동남권 시민청 관련 예산은 2,141,478천원으로 과대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나. 시정권고**

제2시민청은 부지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주의로 불용금액이 최소화되어 시 예산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3. 일회성 축제와 같은 행사 경비 지출 지양 권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여성가족정책실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다문화 공감 페스티벌’ 사업은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가족의 가족관계 및 화합을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교류를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 등 수용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의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공감 페스티벌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200,000	190,000	-	10,000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경비는 개최시기 · 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 · 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다문화가족과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및 용산구에서 유사한 페스티벌이 이미 개최되고 있어 중복된 사업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실은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 지상파 방송

표출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용역 입찰 요건으로 ‘지상파 방송 표출을 연계한 행사 및 축제 수행 실적’을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2회 유찰됨에 따라 해당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정산 내역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사업수행자 간 회계처리 절차가 미흡(방송 송출료 지출자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행사운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 참가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사 용역 등은 경쟁을 통해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공인회계사를 통해 경비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 4. 불용 과다 사업에 대한 관례적 예산편성 지양

### 가. 현황 및 문제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불용률이 20%이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 사유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94	19	20.5%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현원기준에 따라 집행 후 남은 집행 잔액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2,123	630	29.7%	국고 감액교부에 따른 불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6,400	3,604	22.0%	맞춤형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 감소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82	22	27.1%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액 감액 통보에 따른 불용

각 사업의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요 예측 오류 또는 국고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으로 불용 발생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으로 불용률을 최소화 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최근 5년간 여성 복지시설 생활 여성 추가지원 사업 불용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이월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2	87,680	-	77,730	9,950	11.3%
2013	93,980	-	76,251	17,729	18.9%
2014	93,980	-	77,155	16,825	17.9%
2015	94,000	-	78,005	15,995	17.0%
2016	94,000	-	74,745	19,255	20.5%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 예산이 증액된 이후 3년간 지출액이 계속 증가하다 2016년 입소자 감소로 불용률이 급등하였으며, 시설 입소 현원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이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나, 예산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합리적 지출을 위해서는 향후 집행잔액 규모를 고려한 예산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나. 시정권고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반복되는 예산불용은 의욕만 앞세워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향후 여성가족정책실은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반복되는 예산불용을 지양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5. 뉴딜일자리 목적에 맞는 면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필요

###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특별시에는 다양한 공공일자리의 발굴을 통해 시민에게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2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뉴딜일자리 사업은 총 78개 사업에 2,160명을 선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나, 결산결과 예산의 14.3%인 35억 8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뉴딜일자리의 연도별 계획 및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 운영된 세부 사업의 약 70%정도인 30개의 사업만 2016년도에 지속되었을 뿐 15개의 사업은 종료되어 일자리의 수가 늘어난 만큼 종료된 일자리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은 연초 46개 사업, 1,688명의 일자리 제공을 계획하였으나, 참여자 모집 미달과 참여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5번의 추가사업 선정을 통해 32개의 세부사업을 증가시켜 총 78개 사업에 2,16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5번의 추가사업선정에도 약 15%, 35억원의 집행잔액을 기록한 것은 초기 예산편성이 계획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뉴딜일자리 연도별 계획 및 추진결과

	계획 (안)	추진결과
2014	총 24개 사업/ 2,010명 (계속사업 13개, 신규사업 11개)	총 27개 사업/ 2,123명 선발
2015	총 28개 사업/ 1,600명 (계속사업 20개, 신규사업 8개)	총 45개 사업/ 1,730명 선발
2016	총 46개 사업/ 1,688명 (계속사업 30개, 신규사업 16개)	총 78개 사업/ 2,160명 선발

### 나. 시정권고

매년 초기계획에 비해 추가 사업 선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예산 편성시 세부 사업 및 참여대상자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예산 추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에게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단순히 세부 사업 및 일자리 수 늘리기로 비취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세밀한 사업 선정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세부사업의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6.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 철저

### 가. 현황 및 문제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시에서 전년도에 특정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구에 보조한 예산 중 집행 후 잔액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3 등에 의거하여 전년도에 보조한 자치구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경편성 불가 등의 사유로 반납요청 받은 해의 다음연도로 수납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시비보조금반환금의 미수납 현황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 미수납현황

(단위 : 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내 용
계	2,826,187,300	2,353,636,190	472,551,110	
일자리정책담당관	1,356,961,440	1,210,762,720	146,198,720	◦성동구(5건) : 90,441,030원 ◦강동구(3건) : 55,757,690원
사회적경제담당관	1,469,225,860	1,142,873,470	326,352,390	◦성동구(7건) : 206,925,570원 ◦마포구(1건) : 100,000,000원 ◦노원구(3건) : 6,801,680원 ◦금천구(2건) : 1,111,890원 ◦구로구(2건) : 346,360원 ◦강동구(3건) : 11,166,890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로부터 2016회계연도 중에 전년도 보조사업(2013년, 2014년 사업 일부 포함)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 요청을 받은 자치구 중 6개 구에서 총 472,551,11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 **나. 시정권고**

현재 자치구에서는 사정에 따라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요청 받은 해의 추경 혹은 다음연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연도 다음 해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반납 요청 기한 내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7. 서울영어마을 지원 사업 실효성 검토

## 가. 현황 및 문제점

평생교육정책관은 2016회계연도에 서울영어마을의 시설노후 대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기능보강 및 장비교체, 입소학생 참가 비용 지원 추진을 위해 예산 1,86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영어마을은 2004년 첫 개관 당시와 달리 현재의 영어교육 수요 및 교육경향, 그리고 영어 사교육시장의 현실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영어마을은 매년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시설현황

구분	부지면적	건물면적	개관일	조성비	수용인원
풍납	16,733㎡	13,260㎡	2004.12.07	121억원	450명
수유	64,982㎡	12,431㎡	2006.03.27	367억원	450명
관악	20,391㎡	7,040㎡	2010.03.30	298억원	30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6년	2015년	증감
금액	1,868	1,950	△82

### 이용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계	68	72	85
풍납	24	26	33
수유	27	28	37
관악	17	18	17

## 나. 시정권고

서울영어마을 지원은 매년 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는 큰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4박5일의 입소기간으로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영어교육이 아닌 일회성 체험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3곳의 영어마을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다른 교육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기금 폐지·통합을 통한 기금운용 효율성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sup>6)</sup> 및 다른 법령 혹은 조례의 근거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그 운용에 있어서 집행부서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연한 재정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재정투융자기금을 비롯해 21개 기금(계정)<sup>7)</sup>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965년에 설치되어 가장 오랜 기간 운용되고 있으며,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기금이 재정투융자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해 9개, 2000년 이후 12개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들 기금의 설치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의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제외하고 타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해 7개 기금이며, 이 가운데 식품진흥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등 4개 기금은 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설치된 것입니다.

6)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7) 모두 15개 기금에 21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 기금 설치·운용 현황

기 금 명	설 치	소 관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외)
재정투융자기금	1992	기획조정실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경제진흥본부	조례
식품진흥기금	1989	시민건강국	식품위생법(의무)/조례
기후변화기금	2007	기후환경본부	조례
사회투자기금	2012	일자리노동정책관	조례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안전총괄본부	조례
성평등기금	1996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기본법(재량)/조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1996	기후환경본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무)/조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013	기후환경본부	조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993	복지본부	조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999	복지본부	조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999	복지본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재량)/조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02	주택건축국	조례
체육진흥기금	2000	관광체육국	조례
감채기금	2001	기획조정실	조례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03	물순환안전국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무)/조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	복지본부	재해구호법(의무)/조례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기획조정실	조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2007	기획조정실	조례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005	기획조정실	조례
지역개발기금	2017	기획조정실	지방공기업법(재량)/조례

문제는 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의회를 비롯한 법령이 정한 예산통제 기능의 제한을 통해 서울시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반대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민주성이나 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상당수 기금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자유롭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15개 기금 계정에서 당초금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기금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변경내역을 포함할 경우 변경규모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금운용에 주어진 자율성이 집행부서가 기금 운용계획의 부실한 수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기 금 명	당초금액(원)	변경금액(원)	증감액(원)/비율
계	1,306,984,315,000	1,685,626,009,000	378,997,647,000/29%
재정투융자기금	416,180,467,000	382,837,467,000	△33,343,000,000/8%
중소기업육성기금	406,566,771,000	470,074,336,000	63,507,565,000/16%
식품진흥기금	3,229,012,000	6,368,873,000	3,139,861,000/97%
기후변화기금	23,737,651,000	24,537,651,000	800,000,000/3%
사회투자기금	32,062,451,000	33,517,409,000	1,454,958,000/5%
도로굴착복구기금	34,294,545,000	39,083,506,000	4,788,961,000/14%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계정	20,000,000,000	61,079,201,000	41,079,201,000/205%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38,127,782,000	29,051,456,000	△9,076,326,000/24%
체육진흥기금	5,607,070,000	7,393,324,000	1,786,254,000/32%
감채기금	9,455,896,000	313,760,763,000	304,304,867,000/3218%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84,429,673,000	284,429,673,000	전체금액 변경없으나 세부사업비 변경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8,043,889,000	18,043,889,000	전체금액 변경없으나 세부사업비 변경
남북교류협력기금	8,342,292,000	8,423,360,000	81,068,000/1%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6,906,816,000	7,025,101,000	118,285,000/2%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1,670,234,000	2,026,187,000	355,953,000/21%

사업비 편성과 집행 측면을 살펴보면, 2016년 결산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운용하는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전년도 3조 8,330억 7,579만원보다 1,781억 254만원 증가된 4조 111억 7,834만원이며, 수입·지출 규모는 각각 2조 2,464억 5,309만원과 2조 2,458억 127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자성 사업비는 전체 지출액의 약 9.7%에 불과한 2,189억 2,526만원이며 지출금액의 대부분은 기금간 예탁 혹은 예수·예치 등 재무적인 지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각 기금의 주요 재원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혹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나. 시정권고**

별도의 수입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의 예산에만 100% 의존하고, 사실상 일반회계 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는 개별 기금들 가운데 법적의무 없이 시가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시의 재정 운영 효율화와 민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내실있고 심층적인 심의를 통해 기금 존속 기한 연장여부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기 바람.

## 9.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 가.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미집행률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6,489,609	4,819,456	1,670,153	26%
우수정책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212,530	601,562	610,968	50%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102,490	588,787	513,703	47%
기타	4,174,589	3,629,107	545,482	13%

사업비 정산결과 “세계도시와의 우수 정책공유 사업”은 미집행률이 26%입니다. 특히, 세부 사업별로는 “우수정책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 교류 활성화” 사업은 50%,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사업은 47%로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정책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사업의 집행부진사유는 초청 및 방문 워크숍 개최시 상대도시의 장소, 비용 협조로 지출 최소화, 코트라/행자부/세계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책홍보 공동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현지 사정 변화에 의한 사업 보류(폴란드 교통분야 해외진출 사업) 및 KOICA 주관사업(방글라데시 소방방재 역량강화 사업)의 발주시기 지연등으로 사업운영비 미집행 하였으며, 해외사업 전문가 4명의 1년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2명은 3월채용, 1명은 6월채용, 이직 등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에 각 사업에 대한 예산 미집행 사유들을 보면 국제관계 특성상 상대도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업보류, 발주시기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 같은 결과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예상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요업무계획 등 사업에 계획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47%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 10. ‘일자리 대장정’ 추진을 위한 편법적인 예산 운용 지양 필요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는 소관 업무인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 예측’ 사업에 ‘세운상가 산업경제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억 3천만원,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에서 1억 5천만원 등 총 2억 8천만 원을 전용 받아 ‘일자리 대장정’ 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감액	증액	
경제 진흥 본부	세운상가 산업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130	130		일자리 대장정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전용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	150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	243		280	

2016년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업의 당초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혁신지수 모니터링(223백만원)과 서울경제 아카데미(20백만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 예측’ 사업의 목적은 서울경제의 현

황 및 혁신역량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서울지역의 경제 진단, 서울 경제의 현안·이슈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월간 ‘서울경제’ 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장정’ 사업개요는

- 방문현장 : 2015년 후속조치 및 2016년 핵심사업 관련 현장 중심
- 방문시기 : 매월 마지막 주 「일자리대장정 주간」 운영  
(상반기 3~6월, 하반기 9~11월)
- 현장운영 : 주요 정책관련 현장 및 해커톤, 서밋회의, 분야별 중소기업 CEO회의 등 다양한 소통수단과 현장 연계
- 추진절차 : 현장발굴(반기별) → 현장별 운영계획 수립(소관 실·국) →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 후속조치 계획수립 및 실행 등으로

‘서울경제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과의 연관성이 매우 취약하며, 사업의 성격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 편성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에 추후 신규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한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자리 대장정’ 사업 예산을 위해 타 세부사업에서 전용을 하여 예산을 운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 운용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안에 편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대상의 선정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sup>8)</sup>를 해소하고자 2015년말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상인들에게 장기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을 201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일정기간 임대계약 조건 유지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건물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2016년 5월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를 내고 8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상가건물 14개, 지원금액 2억 5천), 당초 목표보다 성과가 저조하여 11월 제2차 공고를 내고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상가건물 24개, 지원금액 5억 1천만원)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상가건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목적과 달리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서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지역(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세운상가·성수동) 외에도 집중 지원 대상과 무관한 구로, 강동, 송

8)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되면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재계약 거부 등으로 영세상인과 원주민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임.

파 등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당초 의도했던 사업의 집중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상가건물에 대해 리모델링·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상가 임차료 인상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기안심상가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사업자나 세입자의 변심 등)로 당초 제출한 상생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중간과정에 대한 점검과정이 없으며,

협약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회수 방안 등 사후관리 대책 또한 매우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 **나. 시정권고**

경제진흥본부는 추후 장기안심상가 사업의 추진시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12. 부실한 사업계획에 따른 저조한 집행실적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는 소공인이 규모와 업종 면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차이가 있어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거버넌스 운영 그리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동일 업종의 소공인 사업체가 집적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을 모집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민간단체와 함께 보조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면 운영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12개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지원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신규로 설치되는 센터는 없이 2015년 당시 서울시에 소재한 9개의 센터 중 7개의 센터에 대하여만 예산 지원을 하여 실제 집행금액은 3억 9천 1백만원입니다.(집행률 43.4%)

이는 본 사업의 예산집행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선정과 센터 운영의 연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선정과 평가 등에 따라 해당 예산의 집행이 결정되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 13. 글로벌 창업센터 민간위탁 사업 관리 철저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는 ‘글로벌 창업센터’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주)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2016년 6월 14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위탁금 19억 3,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출한 위탁금 정산 내역을 검토하면 방침서 및 의회 민간위탁 의결과 위탁협약 공고 때 명시된 내용과 상이한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금 최초 계획 및 정산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sup>주1)</sup>	실제 정산 결과	비 고
계	2,376	1,687	
인건비	140	200	인건비 6,000만원 증가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130	1,043	임대료,관리비, 운영비 8억 9,700만원 증가
사업비	2,150	893	사업비 11억 1,200만원 감소

주1) 방침서, 위탁심의, 의회 의결자료, 민간위탁 공모에 첨부된 제안서 사업계획

정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당초계획 1억 4,000만원에서 정산 2억원으로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대료·관리비 운영비**가 당초계획 1억 3,000만원에서 10억 4,300만원으로 8억 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임대료·관리비·운영비**라고 명시된 내역을 보면, 계획에 없었던 글로벌 창업관련 홍보나 글로벌 창업업체 메뉴얼 작성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방침서와 의회 의결자료, 서울시가 공고한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사업제안요청서에는 1년분이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억 3,300만원이 정산되었고, 글로벌 창업업체 메뉴얼의 경우 메뉴얼 67페이지 작성에 4,000만원을 수의계약 및 집행하고 있어, 제작 단가나 투명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기존에 리모델링비로 4억원을 들여 시설공사와 물품을 구매했으나, (주)르호봇비지니스 인큐베이터가 추가적인 리모델링비로 2억 8,800만원을 수의계약<sup>9)</sup>으로 공사진행 및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홍보비 등으로 2억 2,290만원이 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①데모데이 사업이 7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6억 5,000만원이 축소되었고, ②우수창업기업지원 사업 5억원과 비즈니스 익스체인지 사업 4억원 등 9억원 규모의 사업이 사업화 지원금 바우처라는 계획과 다른 항목 3억 4,400만원이 정산되어, 5억 5,6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금을 창업센터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사업계획을 변화시켜 집행한 것으로, 최초 방침 및 의회에 의결된 내용인 ‘글로벌 창업센터 창업업체 지원 사업비’ 21억 5,000만원과

9) 민간위탁사업으로 위탁된 자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임대료·관리비·운영비’ 1억 3,000만원에 대해 ‘글로벌 창업센터 창업업체 지원 사업비’는 11억 1,200만원이 감액되고, 글로벌 창업센터 ‘임대료·관리비·운영비’는 8억 9,700만원 증가된 결과로 나타난 바,

위탁업체가 서울시가 글로벌 창업센터 수탁 공모를 통해 공고했던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사업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계획과 다른 결과를 제출하는 민간수탁업체를 계획 변경 요청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통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 **나. 시정 권고**

예산은 회계연도 중 일부 제한적으로 전용, 변경하여 운용의 탄력성을 줄 수 있고, 사업내용의 대수선은 추경으로 경정하는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준수함이 원칙이나, 위탁업체가 모든 사업내용을 변경되어 당초 의회가 의결한 사업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습니다.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는 글로벌 창업센터관련 관련 사무가 창업지원 업체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다르게 정산하고 있는 수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여 추가적인 정산과 환수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서울시가 계획한 당초 사업목표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14.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강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의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은 시네마테크 건립을 통해 고전·독립·예술 영화 등 다양성 영화 상영 및 시민 영화인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서울의 영상문화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도시관광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현황 및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현황

- 2013.03.22. 영상산업 정책토론회 개최시 시네마테크 건립 제안
- 2013.10~12월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 2014.10. 16. 시장주재 집중회의 (3개부지)
  - 1) 마포유수지 주차장 2) 서울혁신파크 부지 3) 창동역 문화체육 부지
- 2015.02. 13. 시네마테크 건립 부지 확정
  - 건립 부지 : 중구 초동 64-11 (중구 초동공영주차장)
- 2015.03 시네마테크 건립부지 확정 및 건립(안) 발표
- 2015.07. 시네마테크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5.10. 서울시 투융자 심사 통과(적정)
- 2016.11.~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이월액	16년 예산액	16년 집행액	16년 집행잔액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500,000	56,000	1,772	554,228

상기 집행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사업은 2015년 예산 편성시 S-plex center(상암동)에 시네마테크 건립을 목표로 설계비 5억을 편성하였으나, 새로운 부지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검증 및 신규 투자심사 (서울시 및 행자부) 이행 후 설계비 집행이 가능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설계비 5억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의 계속된 재검토 통보에 따른 사업 지연됨에 따라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의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과 같이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과 이해 관계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5억이라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이월하였다가 미집행 잔액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다른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나. 시정권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해 불용됨으로써, 정작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 15.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및 세부 사업과 무관한 광고홍보비 지출 지양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의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사업은 서울무역전시장 시설노후 및 전시시설 협소로 인한 新전시컨벤션 복합시설개발 필요성을 감안하여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통해 전시컨벤션사업 육성 및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현황 및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추진 현황

- 2016.04.25.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발표(동남권사업단)
- 2016.06.23. 복합개발 시장님 보고
- 2016.07.25. 복합개발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 2016.09.09. 복합개발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조사 의뢰(서울연구원)
- 2017.06. 시장단 보고 및 사업방향 확정
- 2017.08. 복합개발 시장 방침 수립
- 2017.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30,000	86,536	-	45,464
시설비	1,450,000	-	1,450,000	-
계	1,580,000	86,536	1,450,000	45,464

해당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86,536,550 원을 사용하였고, 시설비 중 복합개발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조사 용역비 잔금,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교통영향분석,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하여 16년도 예산 현액의 92%인 1,450,000,000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기의 세부 집행내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관리비중 79,600,000 원은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사업과 무관한 광고비 지출이며, 명시 이월액 1,450,000,000 중 1,200,000,000 원의 지출도 하기의 집행 예정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17년도 중에도 완료되기 힘든 성격의 지출들이라 17년도에도 이월이 예상됩니다.

###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결의 일자	적 요	집행잔액
16-10-04	제11회 인쇄문화축제 언론매체 광고비 지출	6,600
16-11-03	제15회 서울 국제경제자문단 총회 개최 외 2건 광고비 지출	49,800
16-11-24	서울 글로벌기업채용박람회 등 광고비 지출	23,200
	계	79,600

##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사업 명시이월 집행 예정 계획

- 타당성분석 등 : 263,610천원('17.5월 완료)
-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 : 900,000천원(추진시기:'17.9월)
- 교통영향분석 : 150,000천원(추진시기:'17.10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 150,000천원(추진시기:'17.10월)

### 나. 시정권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과도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해 이월됨으로써, 정작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세부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를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16. 세부 사업과 무관한 광고홍보비 지출 지양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의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마련’ 사업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양재 R&D 핵심특화지구 육성하여 자생적으로 집적된 민간 기업연구소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인재, 기업,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2016회계연도 결산서상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마련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80,000	-	80,000	-
연구용역비	150,000	-	140,932	9,06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0,000	100,000	-
계	230,000	100,000	320,932	9,068

그러나 사무관리비 80,000,000원의 세부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제11회 인쇄문화축제 언론매체 광고비 지출’, ‘제15회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 개최 외 2건 광고비 지출’, ‘주얼리위크 외 2건 광고비 지출’ 등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마련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의 광고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바 세부사업과 관련이 없는 홍보비 지출은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세부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를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17.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의 최소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은 서울을 대표하는 최적합장소에서 특색 있는 야시장을 개최하여 재미있는 문화 공연, 독특한 상품, 다양한 먹거리 판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외국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2016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	10,000	9,894	106
행사운영비	1,100,000	968,000	1,921,900	146,100
계	1,100,000	978,000	1,931,794	146,206

하기 예산 변경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사업은 서울 밤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은 서울 야시장의 확대 및 정기 상설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의 사무관리비 978백만원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사업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통계목	예산현액	증가	감소	변경후예산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092,300	-	-978,000	114,300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무관리비	-	10,000	-	10,000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행사운영비	1,100,000	968,000	-	2,068,000

해당 사업은 2015년 수시(10월) 투자 심사 시 총 사업비 22억 원(장소는 4곳)으로 심사를 올렸으나, 심사 결과 11억 원(장소는 2곳)으로 통과되어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6년 제1차(3월) 투자 심사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예산 변경을 하여 총 사업비 21억 원(장소는 4곳)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예산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이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예산 편성 절차를 형해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13	198,400	196,643	1,757	1%
2014	64,600	44,581	20,019	31%
2015	681,300	22,920	277,500	41%

특히 예산 감액을 한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의 경우 상기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지는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이라 2016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진흥본부는 2016년도 예산을 기존 7억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결국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지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여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나. 시정권고**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예산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이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예산 편성 절차를 형해화(形骸化)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다른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18. 서울농장 조성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강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의 ‘서울농장 조성’ 사업은 지방 폐교와 휴경지를 활용하여 예비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유도하고 시민 힐링 체험을 통해 도농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현황 및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추진 현황

- 지방폐교·휴경지를 활용한 서울농장 조성계획 수립(2016.1.19)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16.3.18),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2016.5.2)
-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실습농장 소유주와 협의(2016.6.9)
  - 매도희망액(1,050백만원)과 감정평가액(642백만원) 차이로 매입협의 결렬
- 함평군과 신뢰 및 도농상생을 위해 우선 학교부지 매입 추진(' 16.11~12)
  - 함평군에서 요구한 계약 내용이 서울시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협상이 중단
- 함평군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할 의사가 없으므로 추진 어려움 통보(' 17.4)

### 서울농장 조성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90,000	-	-	90,000
시설비	1,900,000	2,092	1,400,000	497,908
계	1,990,000	2,092	1,400,000	587,908

상기 집행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사업은 실습농장 토지매입절차가 결렬되면서 관련 예산 5억원 중 감정평가비 2,092,000 원을 제외한 4,97,908,000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폐교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비용인 14억원도 2017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상기 추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진행이 용이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의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농장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시점부터 ‘동 사업의 취지는 귀농인 정착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장조성이지만, 세부 사업내용은 농촌체험 및 캠핑 사업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을 만큼 논란이 있었으며, 실제 집행 내역도 이러한 우려대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는 2017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290,000,000 원을 편성한 상황이라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20억이 넘는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으니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는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과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해 불용되거나 이월됨으로써, 정작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 19.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변경 최소화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의 2016년 회계연도 예산 변경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유치과 2016년 회계연도 예산 변경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No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일자	예산잔액	변경후 금액	감	증	사유
1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01-03 행사 운영비	'16-06-30	303,774	243,734	60,040		서울시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필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207-01 연구 용역비		0	60,040		60,040	
2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01-01 사무 관리비	'16-08-02	231,799	194,799	37,000		제1회 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 개최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01-03 행사 운영비		245,761	282,761		37,000	
3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01-01 사무 관리비	'16-10-20	107,418	44,418	63,000		뉴욕 금융관련 투자설명회를 위한 호텔시설 사용 등 사업내용 등 증대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01-03 행사 운영비		58,770	121,770		63,000	
4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301-07 외빈초청 여비	'16-11-03	99,400	39,400	60,000		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변경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01-03 행사 운영비		121,770	181,770		60,000	

투자유치과는 2016년 6월 30일 계획에 없던 ‘서울시 금융산업 활성화  
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방안 연구’ 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  
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행사운영비 60백만원을 ‘여의도 금융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2개월 뒤인 2016년 8월 2일 투자유치과는 ‘제1회 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 개최’ 를 사유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사  
업 사무관리비 37백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다시 변경함으로써 불과 2개  
월만에 행사운영비를 감액했다 다시 증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20일 ‘뉴욕금융관련 투자설명회를 위한 사업내용  
증대를 사유’ 로 사무관리비 63,000천원을 추가적으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11월 3일 행사 개최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금융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의 외빈초청여비 60백만원  
을 전용하여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예산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상기 사례처럼 계획  
에 없는 용역을 진행하느라 다른 세부사업의 행사운영비를 변경해서  
쓴 뒤, 나중에 그 행사운영비가 부족하여 당초 세부사업에서 다시 예  
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행사운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변경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회계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사례처럼 예산 편성 절차를 형해화(形骸化)하는 수준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 20. 사무관리비 등 부족예산에 대한 예비비 우회지출 최소화 필요

###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교통본부는 「동대문주차장 지상 증축물 신규 인수·운영」 관련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 23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결정일	지출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909	909	'16.12.04	'16.12.23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지상증축물 인수 운영비
"	민간위탁금	1,432	1,432	'16.12.04	'16.12.23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지상증축물 인수 및 운영관리
"	민간대행사업비	32	32	'16.12.04	'16.12.23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1항10)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 예비비 지출사례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물 신규인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9억 8,000만원), 인건비(5억 2,100만원), 상가유지관리비(4억 6,000만원), 복리후생비(1억 8,900만원) 등을 공영주

10)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장 위탁관리 사업에서 우선 지출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여 정산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예규를 통하여 예비비를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시교통본부는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된 경비에 예비비를 직접지원하지 않고, 유사 사업의 예산으로 미리 지출하고, 예비비로 이를 간접지원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재적 제약을 회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12월말 예비비 지출결정이 이루어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이며 당시 서울시가 시의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사되고 있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를 감액조정하고,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에 23억 7,400만원을 증액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재정적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예비비 지출사례가 행정자치부가 정한 예비비의 지출제한사안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실제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서울시가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의 불비한 사안을 남용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 나. 시정권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3건의 예비비 지출건은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왜곡한 지출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예비비가 사후정산의 용도로 지출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모성 경비에 대한 부족재원은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편성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 21.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사업의 효율적 집행 검토

###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교통본부는 2016회계연도에 법인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택시회사에 차등지원 함으로써 회사간 서비스 경쟁 토대를 마련하고자 예산 2,1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회사에 인센티브 지급할 예산 1,800백만원을 책정하였고, 인센티브의 60% 이상(1,080백만원 이상)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40% 이하(720백만원 이하)를 관리직 포상금 및 환경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택시물류과-2530).

법인택시회사의 2016년 인센티브집행내역 중 관리직 포상금 및 환경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220백만원이 환경시설개선과는 거리가 먼 사무용기기 및 정비기기 구입과 노동조합 지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6년	2015년	2014년
금액	2,100	2,100	100

#### 인센티브 지급대상 선정 현황

법인택시회사 수	지급 대상회사 수	2년 연속 지급회사 수
255	50	35

## 인센티브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운수종사자 지급	관리직 포상금 및 시설개선비	기타
집행기준	1,080	720	0
실제집행	1,080	500	220

### 나. 시정권고

택시서비스평가 강화 사업은 법인택시 경영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그에 따른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택시 서비스 향상의 핵심요원은 운수종사자들이며, 그들의 동참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금지급 비율 상향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취지 및 집행기준과는 무관하게 택시회사의 사무기기나 정비기기 구입 및 노동조합 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현재의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현금 지급시 기준이 택시회사기준(최상위는 회사당 80백만원, 차상위는 회사당 25백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제 운수종사자가 많은 회사는 운수종사자 1인당 수령하는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집행 결과를 보면 최상위의 경우 한독운수(272명)는 1인당 176,470원, 삼일운수(128명)는 1인당 375,000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적은 회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 22.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검토

###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교통본부는 2016회계연도에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일반 시민들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예산 2,1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에 의거 저상버스 도입을 2017년까지 55%, 2025년까지 100%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선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반버스의 교체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교체하여야지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반버스의 저상버스로의 대차율은 2015년 36%(618대 중 221대), 2016년 39%(590대 중 23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상버스의 교체 시 일반버스로 2015년 19대, 2016년 8대 대차한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17년 55%, 2025년 100% 도입은 불가능하며, 향후 당초의 선언 및 계획을 무리하게 고수하기 위해 차령이 도래하지 않은 버스를 무리하게 폐차 및 대차하여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6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중 6,44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의 파업 및 출고지연에 기인한 것입니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 중 현대자동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6년	2015년	2014년
금액	43,700	21,700	30,033

## 일반버스로 대차 현황

	계	일반버스→일반버스	저상버스→일반버스
2015년	416	397	19
2016년	366	358	8

## 저상버스 도입 현황

	계	일반버스→저상버스	저상버스→저상버스
2015년	267	221	46
2016년	311	232	79

## 나. 시정권고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연간 버스폐차 대수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배정하여야 하고 버스대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대차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향후 더 큰 예산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2025년 도입률 10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저상버스 공급 점유율이 특정회사에 집중되는 경우 파업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따라 사업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제공개경쟁입찰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는 옵션 표준화를 통한 공동구매와 함께 저상버스 구매가격 인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와 다른 특별한 신기술의 도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입가격이 일반버스 대비 182%(218백만원/120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23.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 사업의 효율적 집행 검토

###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교통본부는 2016회계연도에 서울을 방문하거나 관광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친절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을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 사업에 520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 중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에 안내데스크 임차료로 35백만원을 배정하였고, 홍보를 위해 남대문시장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고, 외국계잡지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6년	2015년	2014년
금액	520	550	550

#### □ 사업내용

##### 1. 운영개요

- 공항안내데스크(인천 2개소, 김포 1개소), 예약센터
- 택시현황 386대(법인 194대, 개인 192대)

- ##### 2. 요금체계 : 구간요금제(인천공항↔서울), 대절요금제(관광, 쇼핑), 미터요금제(기본택시요금의 20% 할증)

## 나. 시정권고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운영 사업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방문하고 관광하게 되므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선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므로 공항 데스크 임차료 감면 또는 인하 요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공동운영을 통해 홍보 및 운영의 효율을 꾀하고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용 부담의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은 아직도 외국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외국인 대상 바가지택시요금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외국잡지 등 뿐만아닌 공항 내 방송 등을 통해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 24. 미수납액 관리철저

### 가. 현황 및 문제점

문화본부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중 지난연도수입 징수 결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지난연도수입	1,039	1	1,038	1,038

상기 징수결정액 중 804백만원은 (주)쌈지의 임차보증금 미회수금액으로 (주)쌈지와 임대차 계약관련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4년 12월에 (주)쌈지 소유의 인사동 “쌈지골목 건물” 을 7억5천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전세권만 설정하고 근저당권은 미설정 한 이후
2. 2008년까지 3회에 걸쳐 보증금을 총 7억5천만원 증액하면서 담보 부동산 실제가액 보다 근저당권을 과다 설정하여 전세보증금 일부 미회수

※ 실제부동산 가치는 3억원에 불과하나 근저당권을 6억5천만원 설정, 178백만원만 회수

3. 특히, 건물소유주가 변경((주)쌈지 대표 천호균 →인사사랑 대표 김완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아닌 (주)쌈지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4. 이후, (주)쌈지의 경영난과 2010.6.4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라 법원에 전대차 보증금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등을 통해 전대차 보증금 1,500백만원 중 696백만원을 3회에 걸쳐 회수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2015.6월 현재, 804백만원이 미회수(체납)된 상태임

#### □ 전대차 계약 과정

- 2004. 11. 17 : 서울시와 (주)쌈지 임대차 계약체결 (보증금 750백만원)
- 2004. 11. 19 : 건물소유주 변경 ((주)쌈지 대표 천호균 → 인사사랑 대표 김완식)
- ※ 변경사유 : (주)쌈지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건물을 인사사랑에 23,742백만원에 매각하고 다시 인사사랑과 보증금 2,221백만원, 월임대료 189백만원에 임대차계약 체결
- 2004.12.15 : 계약형태 전환 ((주)쌈지 대표 천호균과 전대차 계약으로 변경)

#### □ 전대차 보증금 인상 과정

- 2006.03.16 : (1차)보증금 250백만원 인상 (750→1,000백만원)
  - 인상사유 : 전시장 위치 및 면적 변경(당초계획 1층 15평 → 실제 입주 3층 52평)
- 2007.12.15 : (2차) 보증금 150백만원 인상 (1,000→1,150백만원)
  - 인상사유 : 동일 건물내 유사 점포 임대료 고려
- 2008.08.02 : (주)쌈지 대표 천호균 보증금 단계적 인상 공문 시행
  - 2009년-15억, 2010년-20억, 2011년-25억 인상요구내역 제시
- 2008.12.15 : 보증금 350백만원 인상 (1,150 → 1,500백만원)
  - 인상사유 : 동일 건물내 유사 점포 임대료 고려

## □ (주)쌘지 파산 및 보증금 일부 회수 과정

- 2009.08.06 : (주)쌘지 대표이사 변경 (천호균 → 임세만)
- 2009.10.15 : 인사사랑 대표 권성욱 (주)쌘지 대표 천호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 2009.11.19 : (주)쌘지와 근저당권 설정해지 조건 설정액 회수 (325  
백만원)
- 2009.11.25 : (주)쌘지에 전대차보증금 반환요구
- 2009.12.14 : (주)쌘지와 전대차 계약해지
- 2010.06.04 : (주)쌘지 파산 선고(대표이사 직무대행 천성국)
- 2010.07.29 : 파산채권신고서 제출(서울시 → 서울중앙지법)
- 2010.09.09 : 경매사건(충남 천안시 소재) 배당액 수령(178백만원)
- 2015.03. : 파산재단에 의한 (주)쌘지 채권·채무액 및 채권자간  
배당액 확정으로 최후 배당금 193백만원 수령

## 나. 시정권고

전대차 계약 당사자인 (주)쌘지의 파산재단으로부터 ‘15.3.13 채권·채무액 및 채권자간 배당액 확정 통보와 ‘15.4.9 법원의 (주)쌘지 파산 종결 결정 공고를 함으로써 건물임대 당사자인 (주)쌘지가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체납된 804백만원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쌘지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마시고 결손처분하여 사후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 25.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문화본부에서는 문화지구 대학로 내에 공공 기초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확보하여 기초공연예술단체가 저렴한 대관료로 연습실을 대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예산센터 3층 공간 리모델링 및 4층 증축 사업을 위한 예산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시설비	1,800	21	0	1,778	

#### 사업내용

- 위치 : 종로구 대명길 3(구 혜화동사무소)
- 규모 : 1,239.25㎡(기존 890.88㎡, 증축 348.37㎡)
- 사업기간 : 2016.1 ~ 12
- 사업내용 : 서울연극센터 3층 리모델링 및 4층 증축

#### 추진경위

- 2015년 9월~11월에 서울연극센터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과하중, 부재의 결함, 철근 산화, 콘크리트 부식 등 노후화 진행상태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진단되어 보수·보강없는 증축 및 리모델링은 어려운 것으로 판명

- 2016년 6월~8월에 서울연극센터 공간 개선공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1백만원에 용역 계약 후 준공

## 나. 시정권고

예산을 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조사를 토대로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신규로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실시한 이후에 예산액을 편성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26. 그린카 보급 사업의 반복적 이월 후 집행잔액 과다 발생

### 가. 현황 및 문제점

그린카 보급 사업은 인체 유해성 배출 오염물질 및 소음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린카 보급으로 서울시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 보조금 지침에 따른 전기차 구매자 대상 완속 충전기 보조금 지원과 버스 급속충전기 유지보수 등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린카 보급사업 및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2015년 사고이월에 대한 2016년 집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사고이월 집행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고이월액	지출액	집행잔액
그린카 보급	9,988	4,156	5,832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072	585	2,487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린카 보급사업의 2015년도 사고이월액 9,988백만원중 5,83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린카 충전인

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액 3,072백만원중 2,487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후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2016년도 보조금의 인상 및 신차 출시에 따른 기대감과 전기차 구매포기라고는 하나 사고이월 후 58.4%, 80.9%에 달하는 불용률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는 그린카 보급사업에서 19,900백만원의 명시이월과 8,096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그린카 충전 인프라구축에서는 명시이월 4,000백만원과 1,825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속반복적인 사고이월 후 불용잔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나. 시정권고**

그린카 보조금의 인상 및 구매자의 구매취소 등 사고이월의 불용 처리에 대한 외부적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향후 그린카 보급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다 충실히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사고이월을 지양하고 사고이월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합니다.

## 27.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의 집행률 저조

### 가. 현황 및 문제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6조(공급의무 등) 및 서울시조례에 의하여 서울시 26만여 세대 지역냉·난방 공급, 마곡도시개발지구 지역냉·난방 공급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및 목동 열병합발전소 여유열의 지역냉·난방 열 확대 공급을 SH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특별회계 민간위탁금등의 2014년부터 2016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운영 (특)	민간위탁금	2014	212,964	187,077	25,887	87.8
		2015	225,603	196,478	29,125	87.1
		2016	182,225	133,418	48,807	73.2
마곡지구집단 에너지공급 (특)	민간대행 사업비	2014	14,840	14,498	342	97.7
		2015	19,587	8,094	11,493	41.3
		2016	30,986	14,580	16,406	47.1
열원시설열수 송관보수공사 (특)	민간대행 사업비	2014	11,358	7,358	4,000	64.8
		2015	10,656	7,760	2,896	72.8
		2016	13,749	8,488	5,261	61.7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 공급확대(특)	민간대행 사업비	2014	840	199	641	23.7
		2015	1,775	960	815	54.1
		2016	1,262	435	827	34.5



상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운영(특)은 예산현액대비 예산현액이 2014년 212,964백만원, 2015년 225,603백만원에서 2016년 182,225백만원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용발생액은 2014년 25,887백만원, 2015년 29,125백만원 및 2016년은 48,807백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난방열생산 재료비 구입의 유가연계변동의 사유등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출예산을 적절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곡지구집단에너지공급(특)의 2016년도 집행율은 47.1% 열원시설열수공관보수공사(특)의 2016년도 집행율은 61.7% 목동(강서지구)지역난방 공급확대(특)의 2016년도 집행율은 34.5%로써 이는 ‘마곡사업의 지연발생’, ‘긴급하지 않은 사업순연 및 절감’ 등 세출예산의 불용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출예산을 적절히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무리한 세출예산의 편성은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한정된 자원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28. 특별조정교부금 조기집행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이라 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며,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교부합니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용에 관하여 그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액은 2,418,441백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액은 268,687백만원입니다.

### 특별조정교부금의 월별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월별/구분	2016년		2015년	
	교부액 (누적액)	비율 (누적)	교부액 (누적액)	비율 (누적)
1월	-	0.00	-	0.00
2월	12,081 (12,081)	4.50 (4.50)	3,505 (3,505)	1.60 (1.60)
3월	33,358 (45,439)	12.40 (16.90)	6,098 (9,603)	2.70 (4.30)
4월	10,908 (56,347)	(4.10) (21.00)	2,500 (12,103)	1.12 (5.40)
5월	- (56,347)	- (21.00)	31,891 (43,994)	14.40 (19.80)
6월	17,150 (73,497)	6.40 (27.40)	28,350 (72,344)	12.76 (32.60)
7월	22,880 (96,377)	8.50 (35.90)	6,078 (78,422)	2.73 (35.30)
8월	- (96,377)	- (35.90)	10,940 (89,362)	4.90 (40.20)
9월	21,315 (117,692)	7.90 (43.80)	6,870 (96,232)	3.09 (43.30)
10월	29,903 (147,595)	11.10 (54.90)	76,953 (173,185)	34.64 (78.00)
11월	61,107 (208,702)	22.70 (77.70)	24,097 (197,282)	10.84 (88.80)
12월	59,984 (268,687)	2.30 (100.00)	24,847 (222,129)	11.20 (100.00)
계	268,687		222,129	

## 나. 시정권고

자치구의 합리적 재원조정으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고 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의 월별 교부액을 확인해보면 상반기 6월까지 73,497백만원(27.4%)로 교부금액이 저조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급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배정되면 설계, 계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각 지자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조기교부가 필요합니다. 특별교부금 신청 내용의 검토·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있지만, 교부금 신청내용의 신속한 검토·심사로 상반기 중에 조기 교부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 2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효율적 운용

### 가. 현황 및 문제점

행정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적응교육 및 취업·생활 지원 등을 통하여 조기 지역적응과 자립·자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전액국비)
  - 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4개소
  - 내용 : 인건비, 초기집중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지원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생활지원
  - 대상 : 서울시 최초 북한이탈주민
  - 내용 : 기초생활물품 맞춤형 지원
  - 지원액 : 세대당 60만원
  
- 하나플라자(의료지원체계 구축) 사업운영
  - 대상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 내용 : 무료치과진료실, 힐링센터, 종합상담실, 이동치과 등

□ 사업실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단위 : 천원)

보조금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930,960	891,903	39,057	4개 센터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생활지원

(단위 : 천원)

보조금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144,000	125,692	18,308	4개센터

하나원 수료 후 공가상태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쌀, 생필품 등 외 별다른 국가지원 물품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TV 등 소형가전제품을 세대당 60만원 상당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플라자 치과진료 등 사업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치과치료	338,112	286,052	52,059
A형간염 예방접종	5,000	2,766	2,233

치과치료 등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치과의사 1명, 사무관리사 1명을 지원하여 평일에 운영하여 총 725명을 진료하였으며 204명에게 전 체틀니 등 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확인한 바, 이는 치과의사 1명이 10월경 서울의료원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되어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담당치과의사가 없는 관계로 동 의료원 치과의 동료의사가 진료를 하는 등 파행적으로 치과 치료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은 총 118명이 예방접종(목표인원 100명)하여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5,000천원을 지급액 하였으나 2,766천원만 사용하여 55.3%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3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나. 시정권고**

국내기반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물품, 의료지원 사업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치과치료의 경우 평일에만 하던 치과진료를 주말(토요일)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는 등 더 많은 이용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치과의사가 사직할 경우 등 의사 공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마련책도 필요합니다.

A형간염예방접종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강화 또는 여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의 진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이 중랑구에 위치하여 서울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원거리 이탈주민은 서울의료원으로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치과치료 등 병원을 2~3개 확대하여 시행함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0.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철저

###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 등에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사업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자치구) => 사업지 신청(자치구→시)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사업수행 및 집행(자치구) => 정산 및 결과보고(자치구→시)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행정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금 지급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자	정산일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활용 세종마을 박물관설치사업(종로구)	20,000	18,450	1,550	16.8.8.	16.11.23
·소공동,청구동 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공소(중구)	15,000	14,200	800	16.5.4.	16.12.22
·보광동 주민센터 샤워시설 개선사업(용산구)	60,000	60,000	0	16.12.	16.12.14
·구민회관 음향장비 교체사업(동대문구)	40,000	40,000	0	16.6.30.	16.11.20
·휘경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동대문구)	50,000	47,703	2,297	16.12.	17.3.15.
·중화1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중랑구)	450,000				진행중
·석관동 자치회관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성북구)	170,000	170,000	0	16.12.	16.12.15



사 업 명	보조금 지급액	집행액	집행 잔액	준공 일자	정산일자
·송천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강북구)	500,000	492,624	7,376	16.12.	17.1.20
·쌍문3동 주민센터 안내간판 설치사업(도봉구)	1,000	380	620	16.07.	17.1.4
·상계1동 주민센터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노원구)	52,980	52,980	0	16.11.30.	16.11.17
·상계8동 주민센터 자동출입문 설치공사(노원구)	8,000	8,000	0	16.7.	
·녹번동 주민센터 옥상나눔 텃밭 조성사업(은평구)	70,000				진행중
·화곡6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강서구)	115,000	112,705	2,295	16.10.	16.12.9
·구로1동 자치회관 및 마을문고 리모델링 사업(구로구)	200,000				진행중
·개봉3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구로구)	250,000				진행중
·신길동 자치회관 헬스장 리모델링 사업(영등포구)	85,000	83,761	1,239	16.12.	17.1.2
·도림동 주민센터 공공공간 재배치사업(영등포구)	116,500				진행중
·동주민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동작구)	300,000	300,000	0	16.12.	17.1.10
·청림동 자치회관 방음 및 계단공사(관악구)	40,000	35,780	4,220	16.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

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각 지방 보조사업별로 각 사업의 완료여부를 확인한 바, 각 사업회계년도 내에 각 사업이 완료(준공일)되었으나 강서구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산 및 결과를 지연보고 및 미보고로 확인되며, 당해연도 3월~4월에 교부한 예산인데도 회계년도에 사업을 완료(준공)하지 못한 지자체도 다수 있습니다.

## **나. 시정권고**

각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지연 보고한 이유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의해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산 및 실적을 보고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 내에 보조사업이 완료(준공)한 사업은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바, 향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결과 및 정산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당해 회기년도에 목적사업을 완료(준공)할 수 있도록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31. 여유자금 운영방식 검토 권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소관부서와 상관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금은 고유목적이 있어 기금계정을 1개의 계좌에 통합하지 못하고 사업별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정기예금 가입률 차이가 있고 이자감소 등 수익성은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금 총 예치액 중 정기예금 예치금은 5,248억원(52.8%)임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금은 16,400억원(56.0%)임

## 나. 시정권고

서울시 전체자금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기금을 포함한 일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연구·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인터넷은행의 출현 등 은행의 여건변화와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이자수입 증대를 포함한 일반·특별회계, 기금의 자금관리를 서울시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32. 정밀한 세입추계 및 여건변동에 대한 대응 철저

###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유통세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취득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수입과 더불어 시세수입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수확보와 더불어 세입추계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6회계연도의 취득세의 수납액은 세입예산보다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예산액, 수납액, 증감액, 증감율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예산현액	수납액	증감액	증감율
2016년	3,302,152	4,892,109	1,589,957	48.1%
2015년	3,470,920	4,527,595	1,056,675	30.4%
2014년	2,809,204	3,311,173	501,969	17.9%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세 수입은 2014회계연도에 당초 세입예산보다 17.9%, 501,969백만원 초과수납 되었고, 2015회계연도에 당초 세입예산보다 30.4%, 1,056,675백만원 초과수납 되었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당초세입예산보다 48.1%, 1,589,957백만원 초과 수납된 4,892,109백만원이 실수납 되어 매년 취득세의 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의 증감율 및 증감액이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취득세 예산액의 산정은 2015년도말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유형별 거래 점유비, 예상 거래 증감율, 가격 증감율,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가계부채 대책발표, DTI·LTV완화 정책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보도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미국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16년 6월 발표)하였으며, DTI·LTV 완화를 17년 7월까지 재연장 발표(16년4월 발표)하였으며,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16년 8월 발표)에 의해 주택공금감소우려로 주택거래가 증가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편성시 예측내용에 반하는 세수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회계연도내 추경을 통하여 세입예산의 증감조정을 함으로써 세수 추계의 오류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나. 시정권고**

시세수입의 근간을 구성하는 자주재원인 취득세의 세입예산편성시 산정기준을 보다 다각화하여 세입추계의 정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초과 수납된 세입예산을 단순한 추가징수로 인식하지 말고 예산편성 시 예측내용이 변동할 경우 추경을 통한 세입예산의 보정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밀성 확보 및 책임성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 33. 체계적인 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전액 불용 사업 근절 필요

#### 가. 현황 및 문제점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오륜동 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 마련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현황 및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추진현황

- 2016. 7.12 :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추진 안내
- 2016. 9.28 :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추진 관련 의견 제출(재촉구)

#### 오륜동 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	-	1,000,000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송파구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립계획 자체를 수립하지도 못함에 따라 건축비(공사비) 예산 1,000,000,000 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과 같은 사전 절차 없이 건축비 1,000,000,000 원이 바로 편성되었는데, 건축비 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용만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송파구에 2회에 걸쳐 건립계획을 요구 하였으나 송파구에서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송파구 자체 건립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을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통해서도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계획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나. 시정권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 받은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34. 서울시 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정산 철저

## 가. 현황 및 문제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의 ‘서울시체육회 육성’ 및 ‘서울시장래인체육회 육성’ 사업은 市체육회와 市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우수선수 발굴·양성을 통한 경기력향상 및 체육진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체육을 구현하고, 국제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서울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와 제21조(보조신청 및 교부결정)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2016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액과 집행액 및 집행잔액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체육회 육성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23,000	23,000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0	13,818	-	1,18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16,532	2,981,862	-	34,670
민간경상사업보조	9,472,235	9,462,135	-	10,100
계	12,526,767	12,480,815	-	45,952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791,528	4,791,528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12,472	1,205,124	-	7,348
민간위탁금	1,050,000	1,050,000	-	-
계	7,054,000	7,046,652	-	7,34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에서 정해진 바가 없어 주관부서(체육정책과)에서는 각 단체에서 보고한 정산서류(사업별 정산내역, 통장사본, 각 단체 감사확인서 등)를 자체검사 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산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육성’ 사업은 대회 주최 측의 행사 취소로 인한 세계씨름대회, 암벽국제대회, 투르드프랑스 대회 등 국제대회 미개최에 따라 1,450백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은 스페셜올림픽 전국대회 운영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장애인직장 운동경기부 휠체어컬링팀 8월 창단에 따른 운영비 일부 미소요 등 사유로 282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6년 정산결과를 살펴볼 때 서울시는 한정된 자원으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비 규모가 크고 세부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이 발행하는 사업비정산 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을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관광체육국은 서울시 체육회 육성 및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 관련 민간 경상 사업보조 사업비도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처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사업비 정산을 받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35. 서남권 돛야구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의 ‘서남권 돛야구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돛구장으로 건립된 서남권 돛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중기계획의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돛구장 교통대책 지표를 제시하며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환경 조성 및 미래 지향적인 체육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 및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남권 돛야구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불용(이월) 사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반납액	불용 및 이월사유
공 사	안양천 다목적광장 편의시설 설치	230,000	194,599		35,401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주요 간선도로 교통표지판 부착	150,000			150,000	돛구장 운영 결과 필요성 부족으로 미시행
	돛구장 내부 조경유지 관리	50,000		40,000	10,000	동절기 및 봄철 해빙기 수목과 초화류 관리를 위하여 명시 이월함.
용 역	구일역 동측 출입구 추가설치	140,000	70,000	98,850	201,150	3개 용역을 1개 용역으로 합쳐서 발주하여 예산절감, 기술심의회 낙찰차액 발생 (예산3.7억원→교부2.5억→낙찰1.6억원)
	축구장 하부 주차장 추가설치	140,000				
	개봉2빛물펌프장 복개	90,000				
	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100,000			100,000	문체부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이후 추진 필요로 미시행
	장미집행 도산계획시설 관변방안	100,000	52,290		47,710	수의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소계		1,000,000	316,889	138,850	544,261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간선도로 교통표지판 부착사업은 ‘2015. 9~부터 돔구장 운영 결과 필요성 부족’ 을 사유로 불용되었고, 돔구장 내부 조경유지 관리 사업은 ‘동절기 및 봄철 해빙기 수목과 초화류 관리를 위하여 명시 이월 함’ 을 사유로 이월 및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구일역 동측 출입구 추가설치 용역, 축구장 하부 주차장 추가설치용역, 개봉2빛물펌프장 복개 타당성 용역은 예산 편성 시에는 370,000,000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제로는 3개 용역을 1개 용역으로 합쳐서 발주함에 따라 201,150,000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사업은 ‘문체부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이후 추진 필요’ 라는 이유로 불용되었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이라 예산 소요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세부 사업은 전체 예산액 1,000,000,000 원의 70%가 이월 및 불용되었기에,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 받은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나 신규 사업의 경우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쉬우니 집행과정에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36. 에스에이치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공간개선단은 에스에이치공사와 2015년 5월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설계용역 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사업내역

1. 사업명 :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35일대(10,324.9㎡)
  - 설계규모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43개소, 신축 3개소, 전통한옥 이축 10개소 설계, 재생박물관 및 부지조성 설계 등

계약서 제3조 3항에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고, 제5조에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2015년 5월)로부터 10개월로 한다.” 고, 제6조 제2항에 “사업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비의 4.5%로 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에스에이치공사는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2015.07.28. (주)건축사사무소 기오현 등과 계약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 간의 계약 제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일부를 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에스에이치공사는 사업의 전체를 (주)건축사사무소 기오현 등과 계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설계용역 사업의 전체를 (주)건축사사무소 기오현 등과 계약한다면 굳이 에스에이치공사를 통한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거 사업비의 4.5%를 에스에이치공사에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 간의 대행사업은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에스에이치공사가 수행할 경우 좀 더 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에이치공사가 사업대행하여 즉시 제3자에게 시행하는 경우라면 굳이 에스에이치공사가 사업대행을 할 필요는 없고, 대행수수료의 발생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향후 에스에이치공사 등 사업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통해 대행수수료 등 불필요한 예산 집행의 낭비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 37. 과도한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관리 필요

### 가. 현황 및 문제점

안전총괄본부 소관 총공사비(최종계약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 교량 및 도로 보수와 관련한 사업 중 3차례 이상의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총 19건입니다. 부서 및 사업소별로는 서부도로사업소가 5건으로 가장 많고, 교량안전과·북부도로사업소·성동도로사업소가 각각 3건, 동부도로사업소·강서도로사업소가 2건, 남부도로사업소가 1건입니다.

3차 이상의 설계변경을 한 19건의 공사 최초계약금액은 227억 원이었으나 최종계약금액은 407억 원으로 180억 원, 79.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공사의 성격상 수요 예측이 어려워 새로운 수요에 따른 예산변경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한 ‘2016년 관내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는 3차례의 설계변경 이후 최초 계약금액이 6억 367만원에서 최종계약금액이 31억 8,076만원으로 5배 이상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강서도로사업소의 ‘2016년 관내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도 최초계약금액은 6억 4,598만원이었으나 4차례 설계변경 이후 22억 8,140만원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차 이상 설계변경 공사 현황(총공사비 10억원 이상)

(단위 : 천원)

당초(최초계약)			변경 후(최종 차수)			
공사명	계약일 (2016)	계약금액	변경계약		계약금액	증감액
			차수	일자		
<b>[교량안전과]</b>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1공구)	2. 4	2,371,699	3	16.12.19	2,953,254	581,555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2공구)	2.11	2,330,458	4	16.12.14	2,956,953	626,495
교량시설물일상유지보수(강남)	1.25	982,761	4	16.12.19	1,183,860	201,099
<b>[동부도로사업소]</b>						
2016년 포장도로 긴급복구 정비공사	2.15	664,697	4	16.11.28	1,519,110	854,413
2016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	4. 1	1,271,288	3	16.12.26	2,104,000	832,712
<b>[서부도로사업소]</b>						
2016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 (연간단가) 시행	2. 3	659,163	4	16.12.21	1,729,541	1,070,378
도로굴착복고공사(도급비)	2.12	847,935	4	16.12.22	2,273,139	1,425,204
2016년交通安全시설 유지보수공사	2.19	455,878	5	16.12.16	1,011,228	555,350
2016년 도로시설물(터널, 복개, 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 공사시행	5. 3	1,461,318	3	16.11.29	1,652,500	191,182
2016년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도급비	5.23	1,121,987	3	16. 9.23	2,535,390	1,413,403
<b>[남부도로사업소]</b>						
2016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	2.23	1,037,568	3	16.12.16	2,082,817	1,045,249
<b>[북부도로사업소]</b>						
2016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	2.15	665,170	4	16.12.15	1,355,520	690,350
2016년 관내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16	603,677	3	16.12.13	3,180,760	2,577,083
2016년 도로시설물일상유지보수공사	3.23	2,394,486	4	16.12.13	2,774,640	380,154
<b>[성동도로사업소]</b>						
2016년 도로손상부분 긴급복구공사	3. 3	665,008	3	16.12.20	1,216,338	551,330
2016년 관내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19	669,100	3	16.12.16	1,687,000	1,017,900
시조사삼거리교차로구간개선 공사	12.11	3,195,310	3	16. 9.28	4,193,180	997,870
<b>[강서도로사업소]</b>						
2016년 포장도로 긴급복구 공사	2.12	667,483	5	16.12.20	2,030,325	1,362,842
2016년 관내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24	645,980	4	16.12.19	2,281,400	1,635,420

계약금액의 증가가 설계변경만이 아닌 물가변동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1년이라는 단기간(성동도로관리사업소 ‘시조사삼거리교차로구간개선 공사’ 제외)임을 감안할 때 물가변동만으로 사유를 한정하기에는 증가폭이 매우 큼니다. 그러므로 위 공사의 계약금액 인상은 설계변경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는 ①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②공사물량의 증감, ③신기술/신공법 개발 등이며 이에 따라 설계내용(설계서)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설계변경이라 말하며, 변경된 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지급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나. 시정권고**

교량 및 도로 보수·복구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차례 이상의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과다합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총공사비가 400%까지 증액되는 것은 적절한 재정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초 계약시 정확한 공사물량의 파악을 통해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아울러 도로굴착 복구 시행 도로정비공사(사후정비)는 분할 발주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38.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 예산편성 권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로 도시고속도로망확충과 간선도로망확충사업으로서 결산서는 아래표와 같으며, 예산현액은 526억 이월액은 56억 불용액은 297억으로서 불용률이 56%에 달합니다.

(단위 : 원)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5,300,000,000	47,306,977,790	52,606,977,790	29,702,990,091	56%

위의 표와 같이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대부분인 예산 중에서 불용사유가 사업별로 합리적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50%를 넘겨서 너무 많습니다. 당장에 시급하고 실현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처리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의 남용이라 판단됩니다.

### 나. 시정권고

예산편성 시 당장에 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하는 예산편성의 남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39. 필요예산은 사전 원인행위하여 사고이월 가능하도록 조치

### 가. 현황 및 문제점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 : 강동구 암사동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 규모 : 교량건설 폭 4~6차로, 연장 1.13km, IC(아천,암사)
- 기간 : 2006. 4. ~ 2017.12.31.(2016.12월말 95%)
- 총사업비 : 356,908백만원

예산액은 전부 전년도 명시이월액으로서 149억원이며 사고이월 11억원 집행잔액 92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78억 5,500만원은 아래 표와 같이 보상금등으로서 지출원인행위를 미필한 것이며, 지출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 요청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17년도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용처리되고 2017년 예산에도 편성되지 못하여 부득불 2018년에 집행 예정되어 사업의 지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합 계		7,855,082,940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운반: 1식×42,184천원≒42,184,000원 -폐기물운반: 1식×87,556천원≒87,556,000원	129,740,000	
가로등설치비	-설치비: 1식×208,179천원≒208,179,000원 -감리비 등: 1식×37,853천원≒37,853,000원	246,032,000	
신호등설치비	-설치비: 1식×120,193천원≒120,193,000원 -감리비 등: 1식×26,023천원≒26,023,000원	146,216,000	
보상비	-토지보상비: 1식×835,946천원≒835,946,640원 -지장물보상: 1식×14,600천원≒14,600,000원	850,546,640	
보전부담금	-보전부담금: 1식×900,000천원≒900,000,000원	900,000,000	
기타 이전비	-기타이전비: 1식×182,548천원≒182,548,300원	182,548,300	
접속도로 (중로3-26)	- 보상(8필지 2,615㎡) : 800,000,000원 - 공사(폭 12m, 연장 220m) 및 이설비 1식: 1,000,000,000원	1,800,000,000	
대체녹지 (구리시 사노동)	- 보상(1필지 89,205㎡): 1,500,000,000원 - 공사(수목식재) : 1,000,000,000원	2,500,000,000	
구리시 요구사항	- 아천IC(교통광장)철쭉식재 및 교량하부 정비(구리한강시민공원) 1식	1,100,000,000	미 이행 시 도시계획 준 공 인 가 차질예상

## 나. 시정권고

차기 이후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사전에 판단하여 미리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사고이월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불용됨으로써 사업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4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미 준수

###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의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사업’은 정비사업의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을 통하여 바른 조합운영 기반 조성을 유도하고,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합리성 및 원활한 사업진행은 위한 공공의 직접참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397,800	388,633	-	9,167

도시재생본부에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라는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조합운영의 실태점검을 통한 투명성 확보로 사업비 절감 및 부조리 발생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결의 일자	적요	지출액
2016-04-20	재개발 업무편람 작성용역	8,800
2016-10-12	재개발 업무편람 작성용역	9,570
2016-11-04	도시재생본부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 프로그램 용역	18,700
2016-11-14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센터장 등 전문가 수당 지급	16,440
2016-11-15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16.10월) 지급	5,141
2016-12-07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16.11월) 지급	5,141
2016-12-19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센터장 등 전문가 수당 지급	16,575
2016-12-19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관련 총괄계획가 수당지급('16.10~12.)	7,500

그러나 상기의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본부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 비용, 재개발 업무편람 작성 용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 지급 등 해당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 받은대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예산사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볼 때 세부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 존재하기에 앞으로는 이를 시정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 41.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관행 근절

##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업 중 불용률이 20%이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업 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일반회계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	152	-	104	68%	기본구상 용역결과 총 사업비가 264억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500억이상) 미포함되어 기본구상(96백만원)외 타당성조사비 미집행
	반환금 기타	13	-	13	100%	조선어학회 선열상징조형물 등 국비 집행잔액 미반납 (고지서 미발급)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150	-	133	88.7%	국내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용자에 대한 시민의 심적 부담감 상승이 용자신청 저조
주택사업특별회계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678	-	327	48.2%	민간획지부분(터파기 공사 후 지연으로 경계부분 불확실) 공사 지연으로 도로개설 공사 일부 구간 미완료(종료사업)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구역 건축설계(실시설계)용역	600	-	600	100%	주거지보전사업 특수성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병행추진 필요하며, 재개발사업 추진지연으로 불용액 발생(사업기간 변경)
	공공관리사업 지원	665	-	159	23.9%	자치구 수요파악 후 편성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652	-	203	31.2%	정체구역 직권해제 추진 등으로 자치구의 코디네이터 파견신청 저조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20	-	4	20.6%	설계정산 후 집행 잔액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 고가도로 건설 공사	1,958	231	653	33.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를 반영한 보상비 집행잔액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3,584	-	1,065	29.7%	국비(1,065백만원) 실제 미교부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21,828	7,809	4,752	21.8%	16년 공공사업 예정이던 이화충신권역이 벽화 훼손(이화)과 직권해제 지연(충신) 등으로 예측이 곤란한 사유발생하여 집행 저조함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734	243	197	26.8%	낙찰차액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1,936	1,290	406	21%	불법건물 시정, 이행강제금 부담, 공사비 자부담 등으로 선정대상 중 상당수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 저조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재촉)	166	-	151	90.9%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절차지연 및 기간소요로 행정순연 발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용자(재촉)	100	-	85	85.1%	토지등소유자는 용자상환 부담으로 용자 신청에 대한 의향이 저조함
도시 개발 특별 회계	상생협력적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유도 방안	150	-	150	100%	계획 변경으로 용역중단(젠트리피케이션 실태분석 위한 데이터 취득비용이 용역 계약비 대비 과다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계약 해지)
	수색역 일대 등 도시 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	300	100	167	55.5%	용역 낙찰차액(17백만원) 발생 및 계획 변경으로 용역 시행이 중단되어 집행사유 미발생(150백만원)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도시개발)	200	-	59	29.2%	소송패소대비 예비적 예산(배상금 30백만원) 전액 불용 및 체비지 매각 축소에 따른 감정 평가수수료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지역거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장안평)	708	286	288	40.6%	당초 지역거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하였으나,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 포함하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당해 예산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비 등 집행잔액임
소계		34,594	9,959	9,516		

불용률 20% 이상 사업은 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정비사업 부진에 따른 예산 불용과 정비구역등 해제지역의 대안사업 부진에 따른 불용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의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요 예측 오류, 국비 미교부 및 사업 미진 등으로 불용 발생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업 중 불용률이 20% 가 넘는 사업들의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하면 약 19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결과적으로 195억 원만큼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이는 의욕만 앞세워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예산 불용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본부의 경우 그 사업의 특성 상 불용과 이월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다한 예산불용은 의욕만 앞세워 세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반복되는 예산불용을 지양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42. 주거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재생본부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주거재생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도정)	2,178,875	1,166,688	852,801	159,386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용자(도정)	1,060,000	1,060,000	-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581,807	527,120	-	54,687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13,613,885	7,770,476	5,569,823	273,586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21,827,534	9,266,471	7,808,825	4,752,238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지원체계마련	733,968	294,191	242,867	196,910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1,936,100	240,320	1,290,000	405,780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재촉)	166,263	15,196	-	151,067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용자(재촉)	100,000	14,810	-	85,190
주거환경관리사업(재촉)	1,840,000	685,551	1,139,571	14,877
계	44,038,432	21,040,823	16,903,887	6,093,7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공공 부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사회적·경제적인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주민 활동이 없는 구역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저금리 용자 중심의 주택개량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주거환경 개선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재생방향에 대한 지역주민들, 지자체 그리고 사업주체 간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 최근 4년간 주거재생 사업 예산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6	44,038,432	21,040,824	16,903,887	6,093,721
2015	46,391,745	22,594,841	13,521,294	10,275,610
2014	30,667,755	17,606,620	7,053,918	6,007,218
2013	42,366,559	20,913,309	7,323,648	14,129,601

20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액 440억 원 중 210억 원 가량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4

년 동안의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도 비슷합니다. 각각의 불용 및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이월과 불용의 불가피함이 인정되나 매년 상당한 비율로 이월 및 불용이 된다는 점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추진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나. 시정권고**

예산 불용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본부의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불용과 이월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예산불용은 의욕만 앞세워 세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반복되는 예산불용을 지양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43. 두레주택 관련 보조금 정산계좌 관리 철저

### 가. 현황 및 문제점

두레주택 사업은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주택 일부(주방, 거실 등)를 함께 사용하면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두레주택 매입 및 공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과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마을 2곳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총 29가구 조성 추진중

- ▶ 공사완료 : 방학동 8가구('14.1월 입주), 시흥동 10가구('15.12월 입주)
- ▶ 공 사 중 : 신사동 5가구('17.5월 준공예정), 휘경동 6가구('17.5월 준공예정)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치	소요예산(단위 : 천원)					비고 (모집대상)
	국비	시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총공사비	
방학동(소형)	0	260,000	5,571	91,668	357,239	여성
방학동(대형)	0	660,000	10,013	199,435	869,448	여성 및 노인
시흥동	0	0 (구유지)	81,965	1,058,951	1,140,916	홀몸어르신
신사동	0	300,000	19,360	487,206	806,566	대학생
휘경동	0	660,000	45,293	770,436	1,475,729	대학생 (B1,F1공동 이용시설)

두레사업 시범사업 추진 관련, 두 사업의 예산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예산의 배정, 지출 및 이자 등에 대하여 사업별 정산이 부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나. 시정권고**

두레주택(은평구 산새마을, 동대문구 휘경마을) 추진에 하나의 통장을 사용하는데 수입 및 지출 부분은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배정되고 있는바, 향후 통장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이자등 모든 비용을 구분정산 할 것을 권고합니다.

## 44. 성곽마을 재생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정산 누락

### 가. 현황 및 문제점

성곽마을 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의거하여 한양도성 주변지역을 역사문화와 생활문화 유산이 공존하는 ‘성곽마을’로 재생하고 문화재 및 경관 보전에 따른 제약사항으로 열악해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 한양도성 주변 9개 권역 22개 마을의 성곽마을 재생사업 중 각 권역별 재생계획에 따라 필요한 앵커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을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곽마을 재생사업 대행계약서 8조에 의거하여 민간대행사업비 2,1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SH공사에서 수령한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신동 성곽마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수입		지출		정산잔액	
	수입금액	적요	지출금액	적요	정산잔액	비고
총합계	2,102,071,232		12,375,740		2,089,695,492	
	2,100,000,000	서울시 대행사업비	499,040	자문회의비		
	2,071,232	통장예금이자	11,876,700	매입대행수수료		

성곽마을 재생사업 대행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제9조(사업비의 정



산) ①항에 대행사업비 분기별 집행내역을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대행사업비 연간 집행내역을 익년도 2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 정산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집행내역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제출받고 민간대행사업의 집행내역을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 45. 대행사업비 관리감독 철저

##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는 SH공사에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 지역」 사업을 아래와 같이 대행계약을 하였습니다.

- 총사업비 : 약 6,967백만원
- 교부금액 : 약 5,469백만원
- 집행금액 : 1,289백만원(목적외 지출금액 1,017백만원)
- 대행계약일 : 2014.12.23.

###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수입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2014.12.31.	1,955,000		1,995,000	
2015.12.17	2,129,705			
2015.1.1.~ 2015.12.31.	14,844	194,564	3,904,985	
2016.12.15.	1,289,000			
2016.12.23.	95,569			
2016.1.1.~ 2016.12.31.	20,952	1,094,959	4,215,547	서울역일대 앵커시설로 목적외 지출 1,017,652
2017.2.17	1,017,652		5,233,199	서울역일대 앵커시설비 입금

○ SH공사의 주요추진 실적

- 2015년 4월 : 창신동 계약금 집행(129백만원)
- 2016년 1월 : 앵커시설 기본구상 수립 용역(20백만원)

○ 서울시, SH공사와 사업대행계약을 하면서 2014년 12월 1,995백만원 지급, 2015년 12월에 2,130백만원 지급, 2016년 12월에 1,385백만원 지급하여 총 5,469백만원 지급

○ SH공사,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에 2015년 194백만원, 2016년 78백만원을 지급하여 총 27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 8월~12월 기간 중 예산과 관련 없는 사업인 “서울역일대 앵커시설 부지매입” 비용으로 1,017백만원 지출

○ 서울시, 2017년 2월 17일 “서울역일대 앵커시설 부지매입” 비용으로 1,017백만원을 SH공사에 지급

## 나. 시정권고

서울특별시와 SH공사의 사업대행계약서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비의 소요액에 대하여 “공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 때마다 “시”가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청구 시 연도별 소요액 검토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비를 총 5,469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만, “공사”의 사업비 지출금액은 272백만원에 불과해 사업비의 지출이 미미합니다. 서울시는 민간대행계약 사업 시 연도별 소요액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별 소요액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특별시와 SH공사의 사업대행계약서 제9조제6항에 의하면, “공사”는 받은 사업비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공사”는 서울시 공공재생과-8114(2016.07.17.)호에 의해 “서울역일대 앵커시설 부지매입” 사업비로 1,017백만원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긴급을 요한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편성된 예산은 목적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46.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이월 지양

### 가. 현황 및 문제점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사업은 경관법 제16조 및 경관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외되고 낙후된 경관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으로 디자인하여 쾌적하고 매력 있는 서울경관 조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자치구와 매칭(5:5)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의 자치구별 사고이월내역과 집행예정시기 및 자치구별 명시이월 내역 및 집행 예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구별 사고이월 내역 및 집행예정 시기

(단위 : 천원)

구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원인행위 미필)	집행 잔액	이월사유	집행예정 시기
합 계	2,280,000	1,579,645	202,878	1,475,885	135,440		
종로구	450,000	450,000	0	450,000	0	설계용역이 8월 완수됨에 따라 11월 공사발주 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2017.08.13
광진구	450,000	383,935	146,430	237,505	66,065	주민민원 해결 및 설계내역 조 정등에 따른 추가 검토사항 발생으로 절대 공기 부족	2017.01.31
금천구	300,000	273,455	29,498	243,957	26,545	설계용역이 9월 완수됨에 따라 11월 공사발주 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2017.07.06
강동구	300,000	235,028	15,000	267,485 (47,456)	17,515	설계용역이 10 월 완수됨에 따라 11월 공 사발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2017.07.09
중 구	280,000	203,023	0	254,685 (51,661)	25,315	상인들의 지속 적인 반대로 1 단계 공사 선 추진하고, 계속 협의하여 10월 말에 2단계 공 사추진 결정됨 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	2017.06.30
중랑구	500,000	34,204	11,950	22,253	0	구 자체예산 추경편성에 따 른 용역기간 부족	2017.05.21

### 자치구별 명시이월 내역 및 집행예정시기

(단위 : 천원)

구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집행예정 시기
합 계	2,050,000	69,368	35,165	1,980,632	0		
중랑구	500,000	34,204	0	465,796	0	설 계 용 역 이 2017.02.20.완수예 정임에 따라 당해연 도 공사발주 불가 구비 확보 자연으로 '16 년도는 설계용역만, 공 사 예산은 명시이월하여 '17년 공사 시행	2017.11.30
성동구 (수제화)	500,000	17,582	17,583	482,418	0	설 계 용 역 이 2017.02.27.완수예 정임에 따라 당해연 도 공사발주 불가 구비 확보 자연으로 '16 년도는 설계용역만, 공 사 예산은 명시이월하여 '17년 공사 시행	2017.12.10
성동구 (상원길)	600,000	17,582	17,582	582,418	0	설 계 용 역 이 2017.02.27.완수예 정임에 따라 당해연 도 공사발주 불가 구비 확보 자연으로 '16 년도는 설계용역만, 공 사 예산은 명시이월하여 '17년 공사 시행	2017.12.10
성북구	450,000			450,000	0	설 계 용 역 이 2016.11.29. 완수됨 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발주 불가	2017.10.30

상기 표에서 보면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2016회계연도의 사고이월 금액은 1,475,885천원으로 2015년 사고이월금액 691,037천원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의 하반기 완료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이라는 이월사유 또한 2015년도의 사고이월의 이월사유와 대동소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의 명시이월금액은 1,980,632천원으로 2015년 명시이월금액 327,000천원보다 증가하였고 2016년도의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설계용역 4건 중 3건이 구비 매칭 부담금이 당해 6~7월에 확보됨에 따라 2017년에 완수예정이며, 1건은 완수가 늦어 당해연도 공사발주 불가’로 나와 있고 집행시기도 2017년 10월 이후로 되어 있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나. 시정권고

공사기간의 부족 및 사업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이월 및 설계용역이 회계연도 내 완료가 안되어 발생하는 명시이월은 사업초기의 단계에서 자치구의 매칭비 예산확보 지연이나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계속반복적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의 발생은 그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47. 서울역 고가정원 사업의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처리

##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역 고가정원 운영화 활성화 사업은 중구 만리동 1가 일대에 규모 24,801㎡의 고가정원을 2017년 5월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운영주체 육성, 주변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사기간 중에도 다양한 활동 홍보를 통한 주민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역 고가정원 운영활성화 집행액 및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역고가정원 운영활성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편성액	세부내역	세부 편성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사유
합계	742,000			323,289	418,711	
행사 운영비	384,000	시민행사 개최	240,000	93,750	146,250	도시재생본부가 진행하는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 공모사업등)과 안정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 진행하는 인포가든 운영, 고가만 화전등 문화행사가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일부만 진행
		국제심포지엄 개최	90,000	73,460	16,540	집행잔액
		산책버스운영 등	54,000	31,890	22,110	집행잔액
사무관 리비	358,000	민간위탁원가 분석용역등	65,000	16,000	49,000	사업계획 변경 (민간위탁 -> 직영)
		자원봉사자 육성	53,000	32,495	20,505	집행잔액
		노숙인재활	50,000	20,880	29,120	집행잔액

통계목	편성액	세부내역	세부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프로그램				
		문화예술사업 추진	10,000	8,500	1,500	집행잔액
		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개발	180,000	46,314	133,686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 발전기획 단이 진행하는 네이밍, BI, 기념품 제 작사업과 중복되어 일부만 시행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중 ‘시민행사개최’ 사업은 240,000천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도시재생본부가 진행하는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과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 진행하는 인포가든 운영사업과 사업이 중복되어 행사의 일부만 진행되어 행사집행 불용액이 146,25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의 ‘브랜드 및 스토리텔링개발’ 사업은 180,000천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 진행하는 네이밍, BI 기념품제작사업과 중복되어 예산액 중 133,68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나. 시정권고

위 사업에 대해서는 타부서와의 연계 및 협력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면 행사등의 내용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용처리가 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부서간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행적협력 관계 개선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기를 권고합니다.

## 48. 착오로 인한 세입예산 과다편성 주의

### 가. 현황 및 문제점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예산은 1,065,87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151,720원입니다. 그 차이 중 예산편성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도림천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구로구청에 보조금 지급한 것으로서 그 잔액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착오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구로구청에서 보내온 반환예정액은 보조금지급액 8,000만원에서 7,924만원 집행 후 그 잔액반환 예상액은 759,380원입니다.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수령액	집행액	잔액
도림천변화장실 설치공사	80,000,000	79,240,620	759,380

그러나, 담당자가 예산편성 요구시 단위를 천단위로 착오하여 759,380,000원을 반환예상액으로 요구를 하여,

2016년 세입예산 편성 확정전인 시의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시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계수 조정시 누락되었고, 또한 2016년도 추경예산시 예산과에 감추경 요청하였으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②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중 156,545,380원은 이미 2011과 2012년에 기 반납된 것인데 착오로 반납예정액으로 예산에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예산오류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오류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까지 영향을 미쳐 예산편성과 배분에 낭비를 초래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면 피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 **나. 시정권고**

세입예산 편성 시 금액과 편성과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 49. 출납폐쇄기한 준수 권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대치1빗물펌프장 유입관로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 :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 학여울역 ~ 양재천(영동6교)
- 규모 : 수문일체형 배수시설 1개소, 암거설치 ■3.0×2.5m L=891m
- 기간 : 2016.12.31. ~ 2017.6.30 (16.12월말 현재 공정율49%)
- 총사업비 : 25,600백만원(2016년 7,710백만원)

또한, 결산서상 예산과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12/31이전			3,899,948,930		
17/1/6			1,898,470,600		
계	8,000,000,000	7,762,680,630	5,798,419,530	2,201,580,470	0

위 표와 같이 2017년 1월 6일 지출액은 1,898,470,60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7조①에 의하면 몇 개의 예외적인 사항 이외에는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16년 12월 31일에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조항에 비추어 보면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회계법 제7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4.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따라서, 2017년 1월 6일 지출분은 2016년 결산에서는 사고이월 하였어야하며, 지출액으로 하여 장부를 마감한 것은 정확한 회계기간

구분을 통한 성과평가나 예산잔액을 잘못 표시되게 함으로서 차후년도 예산편성에도 오류를 발생시키므로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차후에는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출납폐쇄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권고합니다.

# 50. 인건비 과소편성에 따른 예산 전용

## 가. 현황 및 문제점

소방재난본부는 인력운영비 중 보수를 과소 편성하여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에서 5억원, 인력운영비의 직급보조비에서 4억 4천만원, 인력운영비의 연금부담금에서 27억여 원을 전용하여 36억 7,300만원을 보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 편성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편성과 함께 가장 우선적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소 편성한 것은 추계의 오류 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편성의 절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 보수의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감액	증액	
소방 재난 본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6,469	500	-	보수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처리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11,689	440	-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65,751	2,733	-	
	인력운영비	보수	389,371		3,673	

또한, 다른 항목에서의 전용은 일반적 수준이지만 연금부담금에서 27억 3,3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연금부담금의 과다 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금부담금의 경우 27억여 원을 전용하고, 성과상여금에 66백만 원을 전용하는 등 총 28억원 가량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조항으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집행부에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정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예산의 과소·과다 편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나. 시정권고**

소방재난본부는 인건비 중 보수(101-01)의 과소편성과 연금부담금(304-01)의 과다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51. 치밀한 사업계획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

## 가.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비율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2014년	1,041,590	1,002,653	38,937	96.3%
	2015년	1,132,800	819,074	313,726	72.3%
	2016년	1,143,930	755,038	388,892	66.0%

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관련 사업은 차기년도 승진 예상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측인원(정년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 연금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 증가 등)과 실제 확정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승진배수 이내의 평가 대상자 중 당해연도 평가를 포기하는 경우 등으로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나. 시정권고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 경정예산액에 감액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요업무계획 등 사업에 계획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액을 증가 시킨 점에 대하여는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 52. 반복적 이월, 과도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개선요망

### 가. 현황 및 문제점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차량구매 계약체결(2016.12.) 지연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등을 사유로 예산현액 2,633억 7,1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262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예산현액의 24.9%에 해당하는 658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10회계연도에는 335억 2,600만원, 2011회계연도에는 56억 2,400만원, 2012회계연도에는 43억 2,200만원, 2013회계연도에는 11억 5,300만원, 2014회계연도에는 108억 9,700만원, 2015회계연도에는 6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회계연도별로 다르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고이월 규모가 소액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동 사업의 공정관리가 철저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침<sup>11)</sup>에 따라 2015회계연도에 한해 이월이 필요한 예산을 가급적 명시이월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행정자치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15.7.), 3쪽.

- 연도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5년에 한해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 가급적 사고이월보다는 사전 이월수요를 제출받아 검토 후 최종 정리추경 편성시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조치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결산결과 (2010회계연도~2016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총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월액 (D)=(B)+(C)	이월률 (E)=(D)/(A)	이월액 (B)	이월률 (B)/(A)	이월액 (C)	이월률 (C)/(A)	
'16	263,371	171,336	26,224	9.9	26,224	9.9	-	-	65,810
'15	230,575	216,890	13,673	5.9	639	0.2	13,034	5.6	12
'14	165,165	154,194	10,897	6.5	10,897	6.5	-	-	73
'13	131,712	120,519	1,153	0.8	1,153	0.8	-	-	10,039
'12	84,588	80,256	4,322	5.1	4,322	5.1	-	-	8
'11	111,864	106,240	5,624	5.0	5,624	5.0	-	-	0
'10	58,570	25,040	33,526	57.2	33,526	57.2	-	-	4

아울러 동 사업의 불용액(658억 1,000만원) 중 657억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부담비율(총사업비의 60%) 미충족을 사유로 당초 편성된 국비 900억원중 657억원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른바 ‘재원 없는 불용(unfunded disuse)’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16회계연도 중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추경을 통해 시비 354억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시비의 증액조정으로 사업비 부족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나, 사업비 누계를 기준으로 시비 부담비율이 추경 이후에도 59.9%에 불과하여 미교부된 국비 657억원이 2016회계연도 중 교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교부가능성이 적은 국비를 감추경 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 발생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658억 1,000만원)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 9,184억 5,200만원 중 7.1%에 해당합니다.

## **나. 시정 권고**

동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것보다 국비가 감액교부 되면 재원 없는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회계연도 중 편성액보다 국비가 감액 교부될 경우, 적극적인 감추경을 통해 불용액 발생규모를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하철 건설은 시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공정관리에 유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 53. 지반침하 등 예산편성 신중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하철9호선3단계 구간의 도로복구 후 도로 침하를 예방하고자 지반침하조사 및 안전점검용역 예산을 2016년에 170백만을 아래와 같이 신규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 지하철9호선3단계 구간 지반침하조사 및 안전점검용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시설비	170	0	0	170	

그러나 2014년 8월 석촌 지하차도 동공발생 이후 지하철 공사장 전 구간에 대해 지반공동조사를 아래와 같이 기 시행하여, 3단계 구간의 지반침하조사는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 3단계 지반침하 조사 내용

- 지하철공사장 주변 동공유무 전수조사 : 2014. 08.07. ~ 08.31.
  - 조사대상 : 지하철 공사 전현장(지하철9개 현장, 경전철 4개현장)
  - 조사내용 : GPR 및 탐침봉 탐사, 육안검사 등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의원발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산의 합목적성 및 적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54. 사업비 예산편성 미비로 인한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한강사업본부의 2016년 예비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결정일자	예비사용일자	지출(이월)사유
수영장 유지관리(주1)	566,190	2016-11-08	2016-11-10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손해배상금 소송 판결금 지급
소송비용 등	250,000	2016-02-16	2016-03-04	동작전망카페 명도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급
합 계	816,190			

### □ 수영장 유지관리 관련 소송 진행사항

- 1심판결 : 2014. 11. 4. (원고승소율 20%, 판결금 204,626,758)
- 2심판결 : 2016. 06. 1. (원고승소율 50%, 판결금 404,267,914)
- 3심판결 : 2016. 10. 13. (심리불속행 기각)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의 경우, 소송 종료 시기 및 손해배상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유지관리 관련 소송 건 지출사례는 이미 2014년도 1심 판결시 서울시가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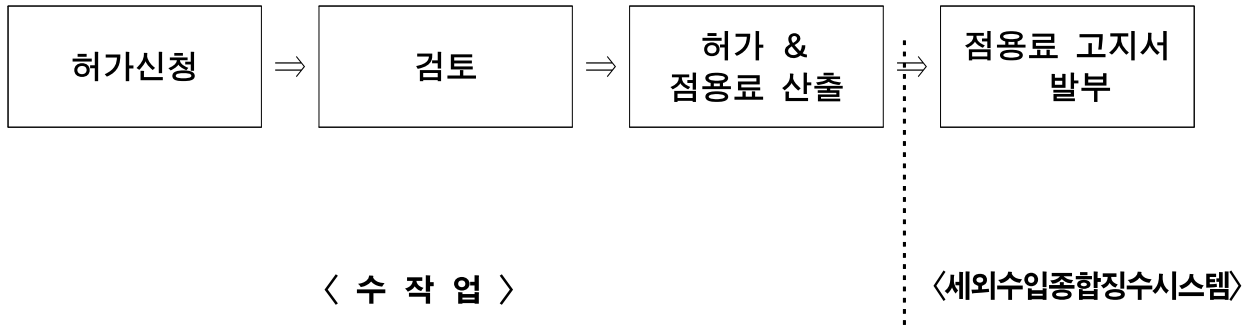
따라서, 수영장 유지관리 관련 예비비 지출은 손해배상금 지출이 충분히 예측되었다는 점에서 2016회계년도에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기 보다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 **나. 시정권고**

수영장 유지관리 관련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사안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즉, 소송 배상금 등의 경우 적절한 기대치 값을 산출하여 예산편성하거나 특히, 확정 판결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55. 하천점용료 부과 누락

## 가. 현황 및 문제점



하천점용료 허가 및 점용료 산출은 수작업에 의하여 진행하며, 점용료 고지서 발부는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에 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자료는 수작업에 이루어지고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상의 부과/징수 자료와의 시스템적 연계가 미비하고, 세외수입시스템은 허가내용의 구체적 정보관리 기능이 없어 허가사항 및 점용료 부과/징수 대사가 어려워 하천점용료가 누락될 위험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허가자료와 부과징수자료 대사시 하기와 같이 하천점용료 누락분이 발생하여 부과하였습니다.

○ 하천점용료 누락분 부과 내역

연번	허가일자 (허가청)	수허가자	점용 면적	점용기간	누락원인	부과일자
1	2012.10.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중부 발전(주)	200㎡	2012.9.11 ~2012.9.25	국토청 허가사항으로 담당자 부과누락	2017.2.27.
2	2015. 5.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중부 발전(주)	6,349㎡	기간연장 2015.5.1 ~2015.5.31	기존 허가(14.4.10~15.4.30 )에 대한 기간 연장으로 연장기간(31일)에 대하여 부과 누락	2017.2.27.
3	2015. 6. 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중부 발전(주)	6,349㎡	기간연장 2015.6.1 ~2015.6.30	기존 허가(14.4.10~15.5.31 )에대한 기간 연장으로 연장기간(30일)에 대하여 부과 누락	2017.2.27.

□ 하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관계

○ 허가 건수와 점용료 부과 건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 아님

- 허가는 허가권자가 서울시장(한강사업본부장)과 외부기관(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혼재
- 허가에는 점용료 부과 대상과 면제대상이 있음  
(수허가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일 경우에는 면제)
- 허가기간이 1년이상 장기간일 경우, 허가 1건에 복수의 부과 건 발생  
(장기허가의 경우 점용료는 매년 1년단위로 부과하고 있음)

○ “부과내역 오류” 오해 발생

- 현행 세외수입시스템은 동일 허가사항에 대하여 점용료 분납

- 고지서 발부시마다 부과 건수 누적
- 수작업을 하는 허가내용과 점용료 고지서 발부(세외수입시스템)의 시스템적 연계 미비
  - 세외수입시스템은 허가내용의 구체적 정보관리 기능이 없어 허가사항 및 점용료 부과·징수 검색이 어려움

## **나. 시정권고**

허가서류와 허가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허가자료와 부과/징수 자료간 대사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는 허가 및 점용료 산출 작업에 대해 하천 점용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점용허가부터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56. 교통방송 계약사무 관련 철저 요망

### 가. 현황 및 문제점

교통방송은 2016년말 기준 122건, 185억 8,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통방송 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공사		용역		물품		조달구매	
	계약 건	금액	계약 건	금액	계약 건	금액	계약 건	금액	계약 건	금액
총계약 금액	122	18,585	8	250	89	5,576	25	12,759	-	-
수의계약	89	1,623	7	151	68	1,316	14	156	-	-
전자입찰	39	16,967	1	99	21	4,265	11	12,603	6	66

이중 2016년 tbs TV 방송제작 야외촬영장비(카메라 외 11건) 구매 등 3건의 계약이 기술협약서 제출을 못했다는 사유로 1순위로 낙찰된 업체를 탈락시키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19) p.6]에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

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동 구매건의 경우 발주기관이 '낙찰된 업체에게 기술협약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기술협약 공급사와의 협약서를 발주하는 공고문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공고문 첨부서류로 협약서를 포함해야 했음에도 미 실시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발주부서가 기술협약 공급사와의 협약서를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된 업체에게 기술협약서가 없다는 사유로 탈락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술협약서를 이유로 낙찰된 업체와 계약 미실시한 현황

(단위 : 원)

연번	내용	금액	비고
1	2016년 tbs TV 방송제작 야외촬영장비 (카메라 외 11건) 구매	49,400,000	1~3순위 업체 탈락 및 4순위 업체 계약
2	2016년 tbs TV 방송제작 특수장비 (카메라 크레인) 구매	28,264,500	1순위 업체 탈락 및 2순위 업체 계약
3	2016년 tbs TV 방송제작장비 (스테빌라이징 외 5건) 구매	19,500,000	1~3순위 업체 탈락 및 4순위 업체 계약

또한, 2016년 tbs 뉴스레터 발간용역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제품목이라고 제한한 상태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방송사 뉴스레터를 50회 이상 제작 및 발송한 업체”로 제한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한 바,

방송사에 매주 뉴스레터를 납품(365일을 7일로 나눌 경우 52주)하

는 업체가 소수 업체일 것으로 사료되기에,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2016년 TV 방송차량 임차용역의 경우도 서울시에 중소기업 경쟁품목에 해당되며 연고지가 서울인 업체가 11개에 불과하나, 렌트카 협회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입찰을 2회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사례 중 다수가 범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시정 권고**

교통방송은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체 계약 건 대비 수의계약의 비율이 72%로 높은 편이고, 기술협약 대상 계약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고, 일부 입찰건에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바, 계약업무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지방계약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 57. 예비비 편성기준 준수 권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방송은 특별회계로서 16년 전체 총예산(918억원)의 2.4%에 해당하는 21억7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설정목적도 세입예산 494억9천9백만원에 균형재정을 목적으로 세출예산 494억9천9백만원을 맞추기 위하여 예비비로 설정한 것으로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①의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문리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1/100을 초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재정균형을 위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되, 추경 시 세입감예산을 통하여 균형재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시정권고**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에 관한 예비비도 동일합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재정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추경 시 감세입을 통하여 균형재정을 맞출 것을 권고합니다.

## 58.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 지양

### 가. 현황 및 문제점

교통방송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016년 세입예산 중 기타사업수입은 광고수입으로서 예산액은 63억8,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원으로서, 30억정도의 예산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광고수입) 예산액의 산출 근거(예산 및 광고수입 목표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	최초 편성요청액 (교통방송)	최종 확정예산액(A) (시 예산회)	실수입액(B)	달성률(B/A)
2012	7,000	9,000	6,584	73%
2013	6,500	8,600	5,957	69%
2014	5,000	7,569	4,833	63%
2015	5,000	6,660	3,578	53%
2016	4,500	6,381	3,306	51%

세입 미수납 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악화로 매년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16년도 기타사업수입(광고수입) 45억원의 세입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본청 예산과에서 세입 세출 균형을 이유로 63.8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목표대비 실제 광고수주액이 51%(33억원)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여야 하는 특별회계의 특성 상 세입예산액의 과다설정은, 세출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세입예산에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하여 추경을 통하여, 예비비와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합하여 32억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세출결산 시 44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추경편성의 행정적 낭비와 함께 예산배분과 운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을 합리적인 추정에 의하여 설정하지 않고, 균형재정을 이유로 세출예산액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의 수주액과 현재와 미래의 여건과 동향을 반영하여 편성한다면, 실제수납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편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불필요한 추경편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시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편성 할 것을 권고합니다.

## 59. 각 위원회 참석수당 등 합리적 조정

###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유능한 위원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참석한 위원들에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국 인사위원회의 회의수당으로 참석수당, 사전심사수당, 주심수당,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제5항,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조례」 제2조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 설치) 8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조례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0.8.>

□ 「2016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00,000 ·초 과: 50,000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하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50,000 ·초 과: 50,000	·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심사수당 지급기준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위원수당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참석수당		사전 심사수당		주심수당		필요경비 (교통비+식비)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인사위원회	100	100	300	150	100	100	50	-
후생복지심의	100	-	-	-	-	-	-	-
공무원국외심사	100	-	-	-	-	-	-	-
지명위원회	100	-	70	-	-	-	-	-
도로명주소	100	-	-	-	-	-	-	-

※ 참석수당 : 초과(2시간이상) 50천원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인 내부위원에게는 위원회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국 인사위원회의 경우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내부공무원을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로 해석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나. 시정권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며,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만 사전심사수당, 주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어 위원회간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행정국)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인 내부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한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제2조 단서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위원회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지침 및 각 위원회 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 60. 예산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요망

### 가. 현황 및 문제점

2016년 2월 민선6기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속 민원해소담당관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독립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0만원(4명분) 중 600만원(1명분)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예산 “재배정” 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한 조직개편 등으로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을 “이체” 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 사안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준 인건비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책사업에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sup>12)</sup> 예산 이체시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이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sup>13)</sup>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집행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예산 “재배정” 을 통해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재배정에 대해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

12)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6.7.), 93쪽.

13)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6.7.), 168쪽.



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 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sup>14)</sup>

이 중 “제1관서” 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sup>15)</sup>에 의거 시·도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 을 의미하는 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 재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9조 제3항<sup>16)</sup>에서는 예산재배정의 대상을 자치구와 관서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규칙 제2조 제3호<sup>17)</sup>에서는 관서를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경우, 관서(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기준상 예산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유로 이체 대신 재배정을 부득이 활용한 것으로 생각되나, 동 사안은 행정

14)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6.7.), 163쪽.

1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1관서는 시·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16)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③ 본청 실·본부·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자치구와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3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17)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서의 장”이란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의 장을 말한다.

자치부의 기준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예산 재배정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나. 시정 권고**

동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중 조직개편으로 인해 독립된 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집행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정자치부 기준 등에 따르면 예산의 이체 및 재배정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기보다는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기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예산 집행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방법론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